써밋 리미티드 남천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99-3121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07.31. 이전부터 계속 거주)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07.31.(목)	25.08.11.(월)	25.08.12.(화)	25.08.13.(수)	25.08.20.(수)	25.08.23.(토)~ 25.08.30.(토)	25.09.01.(월)~ 25.09.03.(수)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써밋 리미티드 남천은 분양 상담 전화(1599-3121), 공식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summit/limited**)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한국부동산 청약 Home(www.applyhome.co.kr)의 청약 자격 확인 및 청약가상체험을 통하여 착오 신청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summit/limited**)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	○	○	○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7.31.(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4.07.31.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5.08.11.(월)	25.08.12.(화)	25.08.13.(수)	25.08.20.(수)	25.08.23.(토)~ 25.08.30.(토)	25.09.01.(월)~ 25.09.03.(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써밋 리미티드 남천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써밋 리미티드 남천 견본주택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22)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부산광역시 수영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5.8.20.)로부터 6개월**	

※ 분양권 전매가 가능할 경우 계약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법」 제57조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주택법」제64조제1항 및「주택법시행령」 제73조제1항[별표3] 규정에 의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 제한됩니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 포함) 단, 상속은 제외합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입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 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외국인 토지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 청약 등 최초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 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주요 내용은 **「써밋 리미티드 남천」** 민영주택 공급을 위한 주요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주택공급과 관련한「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제반 법령이 우선합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과 - 36245호(2025.07.3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545-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 5층, 지상 30~40층 공동주택 5개동 총 835세대**
[특별공급 164세대(기관추천 13세대, 다자녀가구 84세대, 신혼부부 30세대, 노부모부양 25세대, 생애최초 1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07월** 예정 (공정, 인허가변경 및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311	01	084.9661A	84A	84.9661	26.2787	111.2448	57.7155	168.9603	20.9074	73	7	7	17	2	7	40	33	2
	02	084.6335B	84B	84.6335	26.2073	110.8408	57.4897	168.3305	20.8256	55	6	5	13	2	5	31	24	2
	03	112.1883A	112A	112.1883	33.0321	145.2204	76.2071	221.4275	27.6059	36	-	4	-	1	-	5	31	1
	04	112.1883B	112B	112.1883	33.0321	145.2204	76.2071	221.4275	27.6059	36	-	4	-	1	-	5	31	1
	05	122.1744A	122A	122.1744	35.1731	157.3475	82.9903	240.3378	30.0632	139	-	14	-	4	-	18	121	4
	06	142.0904A	142A	142.0904	40.3855	182.4759	96.5189	278.9948	34.9639	218	-	22	-	7	-	29	189	6
	07	144.3369A	144A	144.3369	42.9193	187.2562	98.0449	285.3011	35.5167	68	-	7	-	2	-	9	59	2
	08	177.0714A	177A	177.0714	50.4861	227.5575	120.2807	347.8382	43.5716	68	-	7	-	2	-	9	59	2
	09	182.0396A	182A	182.0396	54.1116	236.1512	123.6555	359.8067	44.7941	68	-	7	-	2	-	9	59	2
	10	182.0455B	182B	182.0455	53.4237	235.4692	123.6595	359.1287	44.7955	68	-	7	-	2	-	9	59	2
	11	227.8195A	227A	227.8195	68.8519	296.6714	154.7527	451.4241	56.0590	2	-	-	-	-	-	-	2	-
	12	243.6838B	243B	243.6838	77.5845	321.2683	165.5289	486.7972	59.9627	1	-	-	-	-	-	-	1	-
	13	243.2681C	243C	243.2681	77.0508	320.3189	165.2466	485.5655	59.8604	1	-	-	-	-	-	-	1	-
	14	243.1634D	243D	243.1634	79.0272	322.1906	165.1755	487.3661	59.8347	1	-	-	-	-	-	-	1	-
	15	243.4533E	243E	243.4533	79.5074	322.9607	165.3648	488.3255	59.9060	1	-	-	-	-	-	-	1	-
합계										835	13	84	30	25	12	164	671	24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벽체, 주동출입구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등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기계/전기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을 포함한 기타면적입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면적 합산 과정에서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주거전용)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물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주택형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 및 주택형별로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동·호수가 자동 배정됩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A	84B	112A	112B	122A	142A	144A	177A	182A	182B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2	2	-	-	-	-	-	-	-	-	4
	장기복무 제대군인	1	-	-	-	-	-	-	-	-	-	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	-	-	-	-	-	-	-	2
	장애인	2	2	-	-	-	-	-	-	-	-	4
	중소기업 근로자	1	1	-	-	-	-	-	-	-	-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7	5	4	4	14	22	7	7	7	7	84
신혼부부 특별공급		17	13	-	-	-	-	-	-	-	-	3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	2	1	1	4	7	2	2	2	2	25
생애최초 특별공급		7	5	-	-	-	-	-	-	-	-	12
합 계		**40**	**31**	**5**	**5**	**18**	**29**	**9**	**9**	**9**	**9**	164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급금액표

[단위 : 원]

약식표기	동호(라인)구분	층구분	해당세대수	분양가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25.12.19	`26.06.19	`27.04.23	`28.04.21	`28.08.18	`28.12.22	
84A	104동 4호, 105동 4호	4~5	4	699,240,000	544,960,000		1,244,200,000	62,210,000	124,420,000	124,420,000	124,420,000	124,420,000	124,420,000	124,420,000	435,470,000
		6~7	4	732,174,000	570,626,000		1,302,800,000	65,140,000	130,280,000	130,280,000	130,280,000	130,280,000	130,280,000	130,280,000	455,980,000
		8~13	12	781,517,000	609,083,000		1,390,600,000	69,530,000	139,060,000	139,060,000	139,060,000	139,060,000	139,060,000	139,060,000	486,710,000
		14~20	14	822,656,000	641,144,000		1,463,800,000	73,190,000	146,380,000	146,380,000	146,380,000	146,380,000	146,380,000	146,380,000	512,330,000
		21~30	20	839,122,000	653,978,000		1,493,100,000	74,655,000	149,310,000	149,310,000	149,310,000	149,310,000	149,310,000	149,310,000	522,585,000
		31~40	19	855,589,000	666,811,000		1,522,400,000	76,120,000	152,240,000	152,240,000	152,240,000	152,240,000	152,240,000	152,240,000	532,840,000
84B	101동 4호	4~5	2	745,886,000	581,314,000		1,327,200,000	66,360,000	132,720,000	132,720,000	132,720,000	132,720,000	132,720,000	132,720,000	464,520,000
		6~7	2	780,955,000	608,645,000		1,389,600,000	69,480,000	138,960,000	138,960,000	138,960,000	138,960,000	138,960,000	138,960,000	486,360,000
		8~13	6	833,615,000	649,685,000		1,483,300,000	74,165,000	148,330,000	148,330,000	148,330,000	148,330,000	148,330,000	148,330,000	519,155,000
		14~20	7	877,507,000	683,893,000		1,561,400,000	78,070,000	156,140,000	156,140,000	156,140,000	156,140,000	156,140,000	156,140,000	546,490,000
		21~30	10	895,041,000	697,559,000		1,592,600,000	79,630,000	159,260,000	159,260,000	159,260,000	159,260,000	159,260,000	159,260,000	557,410,000
		31	1	912,576,000	711,224,000		1,623,800,000	81,190,000	162,380,000	162,380,000	162,380,000	162,380,000	162,380,000	162,380,000	568,330,000
	101동 5호	4~5	2	671,309,000	523,191,000		1,194,500,000	59,725,000	119,450,000	119,450,000	119,450,000	119,450,000	119,450,000	119,450,000	418,075,000
		6~7	2	702,893,000	547,807,000		1,250,700,000	62,535,000	125,070,000	125,070,000	125,070,000	125,070,000	125,070,000	125,070,000	437,745,000
		8~13	6	750,270,000	584,730,000		1,335,000,000	66,750,000	133,500,000	133,500,000	133,500,000	133,500,000	133,500,000	133,500,000	467,250,000

		14~15	2	789,779,000	615,521,000		1,405,300,000	70,265,000	140,530,000	140,530,000	140,530,000	140,530,000	140,530,000	140,530,000	491,855,000
		16~20	5	877,507,000	683,893,000		1,561,400,000	78,070,000	156,140,000	156,140,000	156,140,000	156,140,000	156,140,000	156,140,000	546,490,000
		21~30	10	895,041,000	697,559,000		1,592,600,000	79,630,000	159,260,000	159,260,000	159,260,000	159,260,000	159,260,000	159,260,000	557,410,000
112A	101동 3호	4~5	2	966,082,500	752,925,000	75,292,500	1,794,300,000	89,715,000	179,430,000	179,430,000	179,430,000	179,430,000	179,430,000	179,430,000	628,005,000
		6~7	2	1,011,578,700	788,383,000	78,838,300	1,878,800,000	93,940,000	187,880,000	187,880,000	187,880,000	187,880,000	187,880,000	187,880,000	657,580,000
		8~13	6	1,079,742,300	841,507,000	84,150,700	2,005,400,000	100,270,000	200,540,000	200,540,000	200,540,000	200,540,000	200,540,000	200,540,000	701,890,000
		14~20	7	1,136,599,100	885,819,000	88,581,900	2,111,000,000	105,550,000	211,100,000	211,100,000	211,100,000	211,100,000	211,100,000	211,100,000	738,850,000
		21~30	10	1,159,320,300	903,527,000	90,352,700	2,153,200,000	107,660,000	215,320,000	215,320,000	215,320,000	215,320,000	215,320,000	215,320,000	753,620,000
		31~39	9	1,182,041,500	921,235,000	92,123,500	2,195,400,000	109,770,000	219,540,000	219,540,000	219,540,000	219,540,000	219,540,000	219,540,000	768,390,000
112B	101동 6호	4~5	2	878,643,100	684,779,000	68,477,900	1,631,900,000	81,595,000	163,190,000	163,190,000	163,190,000	163,190,000	163,190,000	163,190,000	571,165,000
		6~7	2	919,993,400	717,006,000	71,700,600	1,708,700,000	85,435,000	170,870,000	170,870,000	170,870,000	170,870,000	170,870,000	170,870,000	598,045,000
		8~13	6	982,019,400	765,346,000	76,534,600	1,823,900,000	91,195,000	182,390,000	182,390,000	182,390,000	182,390,000	182,390,000	182,390,000	638,365,000
		14~15	2	1,033,707,000	805,630,000	80,563,000	1,919,900,000	95,995,000	191,990,000	191,990,000	191,990,000	191,990,000	191,990,000	191,990,000	671,965,000
		16~20	5	1,148,551,500	895,135,000	89,513,500	2,133,200,000	106,660,000	213,320,000	213,320,000	213,320,000	213,320,000	213,320,000	213,320,000	746,620,000
		21~30	10	1,171,541,700	913,053,000	91,305,300	2,175,900,000	108,795,000	217,590,000	217,590,000	217,590,000	217,590,000	217,590,000	217,590,000	761,565,000
		31~39	9	1,194,479,200	930,928,000	93,092,800	2,218,500,000	110,925,000	221,850,000	221,850,000	221,850,000	221,850,000	221,850,000	221,850,000	776,475,000
122A	104동 5호	4~5	2	948,152,800	738,952,000	73,895,200	1,761,000,000	88,050,000	176,100,000	176,100,000	176,100,000	176,100,000	176,100,000	176,100,000	616,350,000
		6~7	2	992,788,200	773,738,000	77,373,800	1,843,900,000	92,195,000	184,390,000	184,390,000	184,390,000	184,390,000	184,390,000	184,390,000	645,365,000
		8~13	6	1,059,713,300	825,897,000	82,589,700	1,968,200,000	98,410,000	196,820,000	196,820,000	196,820,000	196,820,000	196,820,000	196,820,000	688,870,000
		14~15	2	1,115,439,200	869,328,000	86,932,800	2,071,700,000	103,585,000	207,170,000	207,170,000	207,170,000	207,170,000	207,170,000	207,170,000	725,095,000
		16~20	5	1,239,382,500	965,925,000	96,592,500	2,301,900,000	115,095,000	230,190,000	230,190,000	230,190,000	230,190,000	230,190,000	230,190,000	805,665,000
		21~30	10	1,264,204,100	985,269,000	98,526,900	2,348,000,000	117,400,000	234,800,000	234,800,000	234,800,000	234,800,000	234,800,000	234,800,000	821,800,000
		31~39	9	1,288,970,800	1,004,572,000	100,457,200	2,394,000,000	119,700,000	239,400,000	239,400,000	239,400,000	239,400,000	239,400,000	239,400,000	837,900,000
	104동 3호 105동 3호,5호	4~5	6	1,053,520,800	821,072,000	82,107,200	1,956,700,000	97,835,000	195,670,000	195,670,000	195,670,000	195,670,000	195,670,000	195,670,000	684,845,000
		6~7	6	1,103,055,300	859,677,000	85,967,700	2,048,700,000	102,435,000	204,870,000	204,870,000	204,870,000	204,870,000	204,870,000	204,870,000	717,045,000
		8~13	18	1,177,411,400	917,626,000	91,762,600	2,186,800,000	109,340,000	218,680,000	218,680,000	218,680,000	218,680,000	218,680,000	218,680,000	765,380,000
		14~20	21	1,239,382,500	965,925,000	96,592,500	2,301,900,000	115,095,000	230,190,000	230,190,000	230,190,000	230,190,000	230,190,000	230,190,000	805,665,000
		21~30	30	1,264,204,100	985,269,000	98,526,900	2,348,000,000	117,400,000	234,800,000	234,800,000	234,800,000	234,800,000	234,800,000	234,800,000	821,800,000
		31~40	22	1,288,970,800	1,004,572,000	100,457,200	2,394,000,000	119,700,000	239,400,000	239,400,000	239,400,000	239,400,000	239,400,000	239,400,000	837,900,000
142A	101동 1호,2호	4~5	4	1,185,648,300	924,047,000	92,404,700	2,202,100,000	110,105,000	220,210,000	220,210,000	220,210,000	220,210,000	220,210,000	220,210,000	770,735,000
		6~7	4	1,241,429,100	967,519,000	96,751,900	2,305,700,000	115,285,000	230,570,000	230,570,000	230,570,000	230,570,000	230,570,000	230,570,000	806,995,000
		8~13	12	1,325,099,200	1,032,728,000	103,272,800	2,461,100,000	123,055,000	246,110,000	246,110,000	246,110,000	246,110,000	246,110,000	246,110,000	861,385,000
		14~15	4	1,394,824,100	1,087,069,000	108,706,900	2,590,600,000	129,530,000	259,060,000	259,060,000	259,060,000	259,060,000	259,060,000	259,060,000	906,710,000

		16~20	10	1,549,834,200	1,207,878,000	120,787,800	2,878,500,000	143,925,000	287,850,000	287,850,000	287,850,000	287,850,000	287,850,000	287,850,000	1,007,475,000
		21~30	20	1,580,847,200	1,232,048,000	123,204,800	2,936,100,000	146,805,000	293,610,000	293,610,000	293,610,000	293,610,000	293,610,000	293,610,000	1,027,635,000
		31~39	18	1,611,806,400	1,256,176,000	125,617,600	2,993,600,000	149,680,000	299,360,000	299,360,000	299,360,000	299,360,000	299,360,000	299,360,000	1,047,760,000
	104동 1호,2호 105동 1호,2호	4~5	8	1,246,651,000	971,590,000	97,159,000	2,315,400,000	115,770,000	231,540,000	231,540,000	231,540,000	231,540,000	231,540,000	231,540,000	810,390,000
		6~7	8	1,305,339,200	1,017,328,000	101,732,800	2,424,400,000	121,220,000	242,440,000	242,440,000	242,440,000	242,440,000	242,440,000	242,440,000	848,540,000
		8~13	24	1,393,316,600	1,085,894,000	108,589,400	2,587,800,000	129,390,000	258,780,000	258,780,000	258,780,000	258,780,000	258,780,000	258,780,000	905,730,000
		14~20	28	1,466,648,300	1,143,047,000	114,304,700	2,724,000,000	136,200,000	272,400,000	272,400,000	272,400,000	272,400,000	272,400,000	272,400,000	953,400,000
		21~30	40	1,495,992,400	1,165,916,000	116,591,600	2,778,500,000	138,925,000	277,850,000	277,850,000	277,850,000	277,850,000	277,850,000	277,850,000	972,475,000
		31~40	38	1,525,336,500	1,188,785,000	118,878,500	2,833,000,000	141,650,000	283,300,000	283,300,000	283,300,000	283,300,000	283,300,000	283,300,000	991,550,000
144A	103동 3호	4~5	2	1,454,104,100	1,133,269,000	113,326,900	2,700,700,000	135,035,000	270,070,000	270,070,000	270,070,000	270,070,000	270,070,000	270,070,000	945,245,000
		6~7	2	1,522,536,700	1,186,603,000	118,660,300	2,827,800,000	141,390,000	282,780,000	282,780,000	282,780,000	282,780,000	282,780,000	282,780,000	989,730,000
		8~13	6	1,625,158,700	1,266,583,000	126,658,300	3,018,400,000	150,920,000	301,840,000	301,840,000	301,840,000	301,840,000	301,840,000	301,840,000	1,056,440,000
		14~20	7	1,710,712,900	1,333,261,000	133,326,100	3,177,300,000	158,865,000	317,730,000	317,730,000	317,730,000	317,730,000	317,730,000	317,730,000	1,112,055,000
		21~30	10	1,744,903,400	1,359,906,000	135,990,600	3,240,800,000	162,040,000	324,080,000	324,080,000	324,080,000	324,080,000	324,080,000	324,080,000	1,134,280,000
		31~37	7	1,779,092,800	1,386,552,000	138,655,200	3,304,300,000	165,215,000	330,430,000	330,430,000	330,430,000	330,430,000	330,430,000	330,430,000	1,156,505,000
	103동 4호	4~5	2	1,384,863,400	1,079,306,000	107,930,600	2,572,100,000	128,605,000	257,210,000	257,210,000	257,210,000	257,210,000	257,210,000	257,210,000	900,235,000
		6~7	2	1,450,012,000	1,130,080,000	113,008,000	2,693,100,000	134,655,000	269,310,000	269,310,000	269,310,000	269,310,000	269,310,000	269,310,000	942,585,000
		8~13	6	1,547,788,700	1,206,283,000	120,628,300	2,874,700,000	143,735,000	287,470,000	287,470,000	287,470,000	287,470,000	287,470,000	287,470,000	1,006,145,000
		14~20	7	1,629,250,800	1,269,772,000	126,977,200	3,026,000,000	151,300,000	302,600,000	302,600,000	302,600,000	302,600,000	302,600,000	302,600,000	1,059,100,000
		21~30	10	1,661,825,100	1,295,159,000	129,515,900	3,086,500,000	154,325,000	308,650,000	308,650,000	308,650,000	308,650,000	308,650,000	308,650,000	1,080,275,000
		31~37	7	1,694,399,400	1,320,546,000	132,054,600	3,147,000,000	157,350,000	314,700,000	314,700,000	314,700,000	314,700,000	314,700,000	314,700,000	1,101,450,000
177A	102동 3호	4~5	2	1,498,523,200	1,167,888,000	116,788,800	2,783,200,000	139,160,000	278,320,000	278,320,000	278,320,000	278,320,000	278,320,000	278,320,000	974,120,000
		6~7	2	1,743,394,800	1,358,732,000	135,873,200	3,238,000,000	161,900,000	323,800,000	323,800,000	323,800,000	323,800,000	323,800,000	323,800,000	1,133,300,000
		8~13	6	1,860,931,500	1,450,335,000	145,033,500	3,456,300,000	172,815,000	345,630,000	345,630,000	345,630,000	345,630,000	345,630,000	345,630,000	1,209,705,000
		14~20	7	1,958,869,600	1,526,664,000	152,666,400	3,638,200,000	181,910,000	363,820,000	363,820,000	363,820,000	363,820,000	363,820,000	363,820,000	1,273,370,000
		21~30	10	1,998,066,800	1,557,212,000	155,721,200	3,711,000,000	185,550,000	371,100,000	371,100,000	371,100,000	371,100,000	371,100,000	371,100,000	1,298,850,000
		31~37	7	2,037,209,100	1,587,719,000	158,771,900	3,783,700,000	189,185,000	378,370,000	378,370,000	378,370,000	378,370,000	378,370,000	378,370,000	1,324,295,000
	102동 4호	4~5	2	1,802,352,000	1,404,680,000	140,468,000	3,347,500,000	167,375,000	334,750,000	334,750,000	334,750,000	334,750,000	334,750,000	334,750,000	1,171,625,000
		6~7	2	1,887,206,800	1,470,812,000	147,081,200	3,505,100,000	175,255,000	350,510,000	350,510,000	350,510,000	350,510,000	350,510,000	350,510,000	1,226,785,000
		8~13	6	2,014,434,100	1,569,969,000	156,996,900	3,741,400,000	187,070,000	374,140,000	374,140,000	374,140,000	374,140,000	374,140,000	374,140,000	1,309,490,000
		14~20	7	2,120,448,800	1,652,592,000	165,259,200	3,938,300,000	196,915,000	393,830,000	393,830,000	393,830,000	393,830,000	393,830,000	393,830,000	1,378,405,000
		21~30	10	2,162,822,400	1,685,616,000	168,561,600	4,017,000,000	200,850,000	401,700,000	401,700,000	401,700,000	401,700,000	401,700,000	401,700,000	1,405,950,000

		31~37	7	2,205,249,800	1,718,682,000	171,868,200	4,095,800,000	204,790,000	409,580,000	409,580,000	409,580,000	409,580,000	409,580,000	409,580,000	1,433,530,000
182A	102동 2호 103동 2호	4~5	4	1,925,434,500	1,500,605,000	150,060,500	3,576,100,000	178,805,000	357,610,000	357,610,000	357,610,000	357,610,000	357,610,000	357,610,000	1,251,635,000
		6~7	4	2,016,050,300	1,571,227,000	157,122,700	3,744,400,000	187,220,000	374,440,000	374,440,000	374,440,000	374,440,000	374,440,000	374,440,000	1,310,540,000
		8~13	12	2,151,999,800	1,677,182,000	167,718,200	3,996,900,000	199,845,000	399,690,000	399,690,000	399,690,000	399,690,000	399,690,000	399,690,000	1,398,915,000
		14~20	14	2,265,229,200	1,765,428,000	176,542,800	4,207,200,000	210,360,000	420,720,000	420,720,000	420,720,000	420,720,000	420,720,000	420,720,000	1,472,520,000
		21~30	20	2,310,564,000	1,800,760,000	180,076,000	4,291,400,000	214,570,000	429,140,000	429,140,000	429,140,000	429,140,000	429,140,000	429,140,000	1,501,990,000
		31~37	14	2,355,845,000	1,836,050,000	183,605,000	4,375,500,000	218,775,000	437,550,000	437,550,000	437,550,000	437,550,000	437,550,000	437,550,000	1,531,425,000
182B	102동 1호 103동 1호	4~5	4	1,865,023,600	1,453,524,000	145,352,400	3,463,900,000	173,195,000	346,390,000	346,390,000	346,390,000	346,390,000	346,390,000	346,390,000	1,212,365,000
		6~7	4	1,952,785,800	1,521,922,000	152,192,200	3,626,900,000	181,345,000	362,690,000	362,690,000	362,690,000	362,690,000	362,690,000	362,690,000	1,269,415,000
		8~13	12	2,084,429,100	1,624,519,000	162,451,900	3,871,400,000	193,570,000	387,140,000	387,140,000	387,140,000	387,140,000	387,140,000	387,140,000	1,354,990,000
		14~20	14	2,194,158,200	1,710,038,000	171,003,800	4,075,200,000	203,760,000	407,520,000	407,520,000	407,520,000	407,520,000	407,520,000	407,520,000	1,426,320,000
		21~30	20	2,238,039,300	1,744,237,000	174,423,700	4,156,700,000	207,835,000	415,670,000	415,670,000	415,670,000	415,670,000	415,670,000	415,670,000	1,454,845,000
		31~37	14	2,281,920,400	1,778,436,000	177,843,600	4,238,200,000	211,910,000	423,820,000	423,820,000	423,820,000	423,820,000	423,820,000	423,820,000	1,483,370,000
227A	101동 1호,2호	40	2	5,090,359,100	3,967,219,000	396,721,900	9,454,300,000	472,715,000	945,430,000	945,430,000	945,430,000	945,430,000	945,430,000	945,430,000	3,309,005,000
243B	102동 2호	38	1	6,196,268,000	4,829,120,000	482,912,000	11,508,300,000	575,415,000	1,150,830,000	1,150,830,000	1,150,830,000	1,150,830,000	1,150,830,000	1,150,830,000	4,027,905,000
243C	102동 1호	38	1	6,147,541,600	4,791,144,000	479,114,400	11,417,800,000	570,890,000	1,141,780,000	1,141,780,000	1,141,780,000	1,141,780,000	1,141,780,000	1,141,780,000	3,996,230,000
243D	103동 2호	38	1	6,183,453,700	4,819,133,000	481,913,300	11,484,500,000	574,225,000	1,148,450,000	1,148,450,000	1,148,450,000	1,148,450,000	1,148,450,000	1,148,450,000	4,019,575,000
243E	103동 1호	38	1	5,768,657,300	4,495,857,000	449,585,700	10,714,100,000	535,705,000	1,071,410,000	1,071,410,000	1,071,410,000	1,071,410,000	1,071,410,000	1,071,410,000	3,749,935,000

▌ 공통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공급금액 납부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 가격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부적격 사유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선납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에서 명시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부터 종료일까지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본 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분양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 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서류는 서류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며(당첨자로 관리, 청약통장 효력 상실),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 불가)
- 본 아파트 청약 및 계약 시에는 반드시 단지 내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사업지 주변현황(개발현황 등)을 확인하시고 하시길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 등의 내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며 관계법령 등에 의거 입주자를 선정하여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공급예정으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청약 및 계약일정, 분양가, 분양대금 납입일 등)은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 견본주택에는 122A㎡, 142A㎡, 182A㎡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외 주택형은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안내자료 등)에 표기된 평형별 평면 등의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특별공급

[2025.03.3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 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 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 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
전용면적 85㎡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8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 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 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 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3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7.31.(목)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12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단, 본 주택은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 colspan="2">내용</th></tr>
<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1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3단계</td><td>우선공급
(3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4단계</td><td>일반공급
(1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 rowspan="2">5단계</td><td rowspan="2">추첨공급</td><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r><td>1인 가구</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td></tr>
<tr><td>비고</td><td>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td></tr>
</table>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7.31.(목)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처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신청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5.08.11.(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써밋 리미티드 남천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22) - 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에 한함
일반공급	1순위	2025.08.12.(화)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5.08.13.(수) 09:00~17:30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8.20.(수) ~ 2025.08.29(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8.20.(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일정	• 2025.08.23.(토) ~ 2025.08.30.(토) 10:00~16:30까지 ※ 견본주택 방문 접수
대상자	• 특별공급, 일반공급 (1,2순위) 당첨자 (예비입주자 일정 별도 통보 예정)
제출 장소	• 써밋 리미티드 남천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22)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유의사항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 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 통장 부활)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포함)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 제출의 경우, **발급용도는 '계약 및 사업신청' → 제출처는 '써밋 리미티드 남천' 공급계약'**을 필수 입력 후 발급분에 한해 계약 가능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대조 확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발급"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발급'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 30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공급 가점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해당) - 만 19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해당)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 발급'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 및 부양가족에 포함 시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견본주택 방문청약 접수 시 제출(인터넷 청약의 경우 미제출)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국내기업·기관소속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본인	• 해당기관의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대체)
다자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견본주택에 비치, 신청자 본인 점수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미혼 확인)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이 모집공고일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발급"으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다서)제출 임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 (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공급 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본인	• 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견본주택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자격요건 확인서	-	• 당사 견본주택 비치 [혼인신고일(7년 이내), 자녀수(태아포함), 월평균소득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입주자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조회기간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표1> 참조)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입주자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성명,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 (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부동산소유현황 (<표3> 참조)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본인	•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제 제6호서식) ※ 견본주택에 비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또는 손자녀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과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표 상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 조회 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발급"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아래에 해당 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기존주택 처분관련	본인	•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서약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2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제 제6호서식) ※견본주택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최초 자격 요건 확인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조회기간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표1> 참조)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표2> 참조)	본인	•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성명,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배우자가 없는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진다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견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부동산소유현황 (<표3>참조)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포함)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등본,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미분양 주택 확인 서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기타 소명서류	해당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된 상세**로 발급 요망.
※직인 날인이 필요한 서류 중 직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 및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표1>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구분		소득 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이하 같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직인날인)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및 세무서
	신규취업자/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하거나, 본인의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활계산하여 추정	①, ②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 날인)	①, 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 불가) ② 위촉증명서 및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 또는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미신고자) ③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및 세무서 ③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①,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원본) ②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소득금액증명원 ③ 전년도 제무재표	① 세무서, 등기소 ② 세무서 ③ 해당 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직인 날인된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직인날인)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등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해당 직장 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프리랜서 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증명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 세무서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견본주택에 비치) ②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상기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7.31.) 이후 발행분으로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증빙서류는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에서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 전체 및 성명'이 정확이 표시 되어야 인정됩니다.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구분		소득 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자격입증 기본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 직장 및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1년 이내(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 ※과거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합니다.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① 소득금액증명 및 납부내역증명서와납세증명서(종합소득세납부자) (결정세액의 환급이나 '0'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① 세무서 ②, ③ 해당 직장 및 세무서

※상기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는 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통산 5년의 납부실적)이며,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증빙서류는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에서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 전체 및 성명'이 정확히 표시 되어야 인정됩니다.

▌ <표3>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구분	소득 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② 등기소(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포함) ③ 해당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 이택스, 서울시 외 위택스 ④ 해당 행정복지센터, 해당 축산과, 토지이음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④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법」 및 「초지법」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조회 명의인] "신청하신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로는 부동산소유현황 조회내역이 없습니다." 내용 화면 인쇄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24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상기 자산입증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를 포함 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포함)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의 제출의 경우, **발급용도는 '계약 및 사업신청' → 제출처는 '써밋 리미티드 남천 공급계약'**을 필수 입력 후 발급분에 한해 계약가능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대조 확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발급"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발급"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 발급"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 및 부양가족에 포함 시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인터넷 청약의 경우 미제출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구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	장애인등록증	본인 및 세대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분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인 경우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국내기업·기관소속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서약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견본주택 비치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가 아님을 확인받는 경우 - 추첨제 당첨된자 중 우선공급(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으로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 (광역시 적용)
일반공급 당첨자 (가점제, 예비입주자)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 존·비속	•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 존·비속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발급"으로 발급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발급"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또는 손자녀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 「국민겅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는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포함)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등본, 주택공시가격 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미분양 주택 확인 서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기타 소명서류	해당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된 상세**로 발급 요망.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 일정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5.09.01.(월)~2025.09.03.(수) 3일간(10:00~16:30)	써밋 리미티드 남천 견본주택(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22)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별도 안내 예정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 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청약 시 경쟁이 발생한 타입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경쟁 미달 타입은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계좌 이체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아래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 서류	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사전서류 미 접수 시 필수 서류 구비)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와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자격 검증서류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 완료시 제외)
	○		인감증명서	- 용도에「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발급용에 한함. ※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계약금 입금증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불가,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내역증
		○	추가 개별통지서류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대한민국 전자수입인지 (인지세 납부)	-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 :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 구매 및 출력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금액 :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자금조달계획서	- 당사 홈페이지 게재 및 견본주택 비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사항		○	인감증명서(계약자)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청약자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견본주택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인감도장(계약자)	
		○	위임장(계약자)	
		○	신분증 및 인장(대리인)	

※ 부동산거래신고 6억 이상의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 비치된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여 추가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름)

대상증서	공급계약서,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계약서, 전매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시 제출하는 계약서)
납부기한	2023.01.01. 시행된 「인지세법」제8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 납부
납부방법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재 →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2.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납부금액	

계약서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및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전매 포함 분양계약 체결 시)에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 기준(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입니다.

※ 공급계약서, 중간 전매계약서, 최종 전매계약서는 각각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전매 할 때마다 인지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 바랍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중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미납, 과소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BNK경남은행	207-0191-7991-05	신한자산신탁(주)
중도금/잔금	BNK경남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동호수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계약금 납부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현금 수납 불가)
※ 계약금 및 잔금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당첨자가 정당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또는 계약금 입금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모두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금된 계약금은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 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는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당첨이 제한됩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최초 분양계약자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분양계약이 취소될 경우 명의변경을 통하여 분양권을 매수한 양수인은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사업주체 등에게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승인(변경 포함)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자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5%) 완납 시 무이자 대출 조건으로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거소 요건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대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협약이 미체결 되거나, 대출협약 체결의 지연,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금리를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 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연체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공급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금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 완납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에 따라 중도금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약정 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는 비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세대당 2건(기존 보증 이용건수를 합산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융자지원 부분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금액은 금융기관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축소 될 수 있으며, 특히 입주 시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보비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은행과 중도금대출 협약 등에 의거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이의제시 및 보상 등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0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및 유의사항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VAT포함, 원)

주택형(타입)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 시	입주지정일	
84A	20,000,000	2,000,000	18,000,000	
84B	20,000,000	2,000,000	18,000,000	
112A	26,000,000	2,600,000	23,400,000	
112B	26,000,000	2,600,000	23,400,000	
122A	28,000,000	2,800,000	25,200,000	
142A	33,000,000	3,300,000	29,700,000	
144A	33,000,000	3,300,000	29,700,000	
177A	41,000,000	4,100,000	36,900,000	
182A	42,000,000	4,200,000	37,800,000	
182B	42,000,000	4,200,000	37,800,000	
227A	53,000,000	5,300,000	47,700,000	
243B	57,000,000	5,700,000	51,300,000	
243C	57,000,000	5,700,000	51,300,000	
243D	57,000,000	5,700,000	51,300,000	
243E	57,000,000	5,700,000	51,300,000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 공사비	계약금	수협은행	1010-2613-4360	신한자산신탁(주)
	잔금 납부계좌	수협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동호수

3) 발코니 확장시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공사에는 외부샤시(비확장 발코니 외부창호 포함), 확장형 주방가구, 확장부위 마감 연장(거실 우물천장 확대 포함), 일부타입 욕실 및 드레스룸 확장(타입별 상이), 거실/복도 벽체 마감재(시트판넬,

가구판넬, 타일, 도장마감 등 타입별 상이) 및 목창호 디테일 변경 등이 포함되며, 타입별 확장 부위는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 안내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시 거실/복도 벽체 마감재 두께에 따른 안목치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에 따른 공사비용은 분양공급가와 별도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는 별도로서 VAT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비용은 주택가격과 별도이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친환경주택성능평가, 건축물의 피난시설 · 방화구조 등)을 준수하여 설치되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품질(타사 제품 포함)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를 별도계약으로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안내자료의 이미지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확장 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은 입주자의 책임이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 또는 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 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및 변경을 개별시공 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및 평면옵션, 특화품목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전자식스위치, 세대/통신단자함, 온도조절기 등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설계변경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의 규격 및 사양 (유리, 창틀, 하드웨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개폐방향, 프레임 및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는 비확장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가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 등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세대가 기본형(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또는 벽체 돌출, 실사용면적의 감소, 천장 크기의 감소, 조명의 상태와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되거나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환기구, 급배수관, 에어컨 매립배관의 위치 및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창호의 열림 방향 및 규격 등은 입주자의 사용 환경 및 아파트 내, 외부 마감 등을 고려하여 사업승인도서 및 견본주택의 형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창호 및 주방가구 등 제공품목 구성이 확장 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안내자료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 평형이라도 해당 동, 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허용오차 내)
- 발코니 확장 시와 비확장시 발코니 바닥단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일부), 다용도실,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 등의 천장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등이 변경될 수 있고, 다른 주택 형별과 천장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추가선택 품목 선택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가 설치되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인접 상·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 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시공은 건물의 사용승인 완료, 계약자의 잔금 납부 완료 및 입주 후 가능합니다.

▌추가선택 품목(모든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 추가선택 품목 내 기본형(무상) 내용은 발코니 확장 기준 안내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에는 외부샤시(비확장 발코니 외부창호 포함), 확장형 주방가구, 확장부위 마감 연장(거실 우물천장 확대 포함), 일부타입 욕실 및 드레스룸 확장(타입별 상이), 거실/복도 벽체 마감재(시트판넬, 가구판넬, 타일, 도장마감 등 타입별 상이) 및 목창호 디테일 변경 등이 포함되며, 타입별 확장 부위는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 안내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면선택 및 추가선택품목(현관중문, 벽/바닥마감재, 주방특화, 수납특화, 가전류 등)은 사업주체 큐브광안피에프브이(주),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고객 간 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며,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견본주택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단종,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발에 따라 동일회사의 동종,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미설치된 타입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의 디자인이 적용되며, 옵션의 형태 및 사이즈는 타입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카탈로그 등 안내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4A/B, 112A/B - 122A기준 / 144A - 142A기준 / 177A, 182B, 227A, 243B, 243C, 243D, 243E - 182A 기준)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전기/통신단자함 등의 설치위치, 설치수량, 제품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현관중문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2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현관중문	84A/B, 112A/B, 122A, 142A, 144A	- 미설치	- 3연동 자동중문	84A	3,500,000	122A 견본주택 설치 디자인 기준
				84B	3,500,000	
				112A	3,500,000	
				112B	3,500,000	
				122A	3,500,000	
				142A	3,700,000	142A 견본주택 설치 디자인 기준 (천장고 상이)
				144A	3,700,000	

• 현관중문은 자동형으로 현관에서 세대로 진입 시 자동으로 열리며, 세대에서 나갈 시에는 별도의 버튼으로 작동하며 개별적인 속도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 본 공사 시 센서 및 버튼의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84A/B, 112A/B 타입은 현관중문 설치 위치에 천장 포인트 마감재 재료 분리를 위한 천장인방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현관중문은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옵션 선택 시 공간 상의 이유로 배선기구, 스프링클러, 환기디퓨저, 화재감지기, 조명기구의 배치 및 수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84A/B, 112A/B 타입의 경우 평면 구성 상 122A 타입 신발장 하부에 설치된 세라믹타일 포인트가 설치되지 않고, 일상화 수납공간의 형태로 바닥타일이 연장되어 시공됩니다.
• 144A 타입의 경우 평면 구성 상 142A 타입 현관입구에 설치된 은경판넬 아트월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바닥마감재 특화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2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바닥재	84A/B, 112A/B, 122A, 142A, 144A	- 전 실 : 광폭 강마루 (섬유판)		2-1안	- 전 실 : 원목마루	84A	18,500,000	122A 견본주택 설치 디자인 기준
						84B	19,500,000	
						112A	23,500,000	
						112B	23,500,000	
						122A	25,500,000	
						142A	26,600,000	142A 견본주택 설치 디자인 기준
						144A	30,800,000	
				2-2안	- 거실/주방 : 유럽산 타일 (600*1,200) - 침실 : 원목마루	84A	12,000,000	122A 견본주택 설치 디자인 기준
						84B	13,000,000	
						112A	15,000,000	
						112B	15,000,000	
						122A	15,500,000	
					- 거실/주방 : 유럽산 타일 (800*800) - 침실 : 원목마루	142A	17,000,000	142A 견본주택 설치 디자인 기준
						144A	20,000,000	
	177A, 182A/B 227A, 243B, 243C, 243D, 243E	1-1안	- 전 실 : 원목마루					182A 견본주택 설치 디자인 기준
		1-2안	- 침실 : 원목마루 - 거실/주방 : 유럽산 타일 (900*900)					

- 본공사 시 강마루 제조사 및 규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원목마루 제조사 및 규격, 시공패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목마루는 천연자재로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재특성상 고유의 옹이 및 무늬, 워터라인이 있을 수 있으며, 동일 수종의 자재여도 색상과 무늬 등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바닥타일 나누기, 방향 및 타일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마감재 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닥 마감재 옵션 옵션형(2안) 선택 시 타입 및 옵션선택에 따라 시공부위가 상이합니다.
- 84B, 112A/B, 122A 세대 다용도실 내부 바닥(세탁기 설치 부위 제외)은 바닥재 옵션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타일로 시공됩니다.
- 142A, 144A, 177A, 182A/B, 227A, 243B, 243C, 243D, 243E 세대 보조주방 바닥(세탁기 설치 부위 제외)은 바닥재 옵션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타일로 시공됩니다.

▌벽 마감재 특화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2안 - 옵션형(유상)			비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액		
거실/복도 벽 마감재	84A/B, 112A/B, 122A, 142A, 144A	- 시트판넬	- 세라믹타일 + 가구판넬	84A	5,800,000	122A 견본주택 설치 디자인 기준
				84B	6,600,000	
				112A	6,400,000	
				112B	6,400,000	
				122A	8,800,000	
			- 세라믹타일(금속포인트) + 도장마감	142A	10,000,000	142A 견본주택 설치 디자인 기준
				144A	7,600,000	

- 거실/복도 벽 마감재는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설치되며, 비확장 시에는 도배지로 마감됩니다.
- 벽 마감재 옵션에 따라 마감재 두께에 따른 안목치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부위별로 규격, 나누기, 시공 상세 등이 상이합니다.
- 벽 마감재 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벽 마감재 옵션 옵션형(2안) 선택 시 타입에 따라 시공 부위가 상이하며, 부위별 목창호 규격 및 세부 디테일은 타입별로 상이합니다.

▌드레스룸 특화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2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드레스룸 특화	84A/B, 112A/B, 122A, 142A, 144A	- 드레스룸 : 포켓도어 + 폴대형 시스템선반	- 드레스룸 : 포켓도어 + 디자인 시스템선반 (조명 유리선반 포함) + 천장형 제습기	84A	3,480,000	122A 견본주택 설치 디자인 기준 -
				84B	4,280,000	
				112A	4,280,000	
				112B	4,280,000	
			- 드레스룸 : 가구도어 + 디자인 시스템선반 (조명 유리선반 포함) + 천장형 제습기 / 붙박이장 (유리도어 + 조명 유리선반)	122A	10,880,000	
		- 드레스룸 : 포켓도어 + 폴대형 시스템선반	- 드레스룸 : 유리슬라이딩도어 + 디자인 시스템선반 (조명 유리선반 포함) + 천장형 제습기	142A	5,480,000	142A 견본주택 설치 디자인 기준
				144A	8,780,000	

- 드레스룸 특화 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드레스룸 내부는 도배지로 마감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옵션형(2안) 선택 시 천장형 제습기가 포함됩니다.(가야 / KY-1005P)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옵션형(2안) 선택 시 조명 유리선반은 전원 연결로 인해 고정 설치되어 이동할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옵션형(2안) 선택 시 조명 선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하단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조명기구 SPEC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디자인 시스템 선반(조명)은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침실 붙박이장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2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침실 붙박이장	84A/B, 112A/B, 122A, 142A, 144A	- 미설치	- 붙박이장 1개소	84A	1,500,000	122A 견본주택 설치 디자인 기준
				84B	1,500,000	
				112A	1,800,000	
				112B	1,800,000	
				122A	2,000,000	
		- 미설치	- 침실3 붙박이장 1개소 (유리도어 + 조명 유리선반)	142A	7,200,000	142A 견본주택 설치 디자인 기준
				144A	7,200,000	

• 84A/B, 112A/B, 122A타입의 붙박이장 설치 위치 및 사이즈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42A, 144A타입의 붙박이장 옵션 옵션형(2안) 선택 시 조명 유리선반은 전원 연결로 인해 고정 설치되어 이동할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용도실 수납 특화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2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다용도실 수납장	112A/B, 122A	- 미설치	- 수납장	112A	1,900,000	122A 견본주택 설치 디자인 기준
				112B	1,900,000	
				122A	1,700,000	

• 112A/B, 122A타입의 다용도실 수납장 설치 위치 및 구성은 타입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방 특화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2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주방 특화	84A/B, 112A/B, 122A	- 주방가구 : 노빌리아 - 벽/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2-1안	- 주방가구 : 노빌리아 - 벽/상판 : 세라믹타일	84A	1,800,000	아일랜드 측면 마감 1안 - 가구 마감, 2-1안 - 가구 마감, 2-2안 - 세라믹타일 마감
					84B	1,400,000	
					112A	1,800,000	
					112B	1,800,000	
					122A	1,800,000	
			2-2안	- 주방가구 : 라이히트 - 벽/상판 : 세라믹타일	84A	8,300,000	
					84B	6,000,000	
					112A	13,000,000	
					112B	13,000,000	
					122A	13,000,000	
	142A, 144A	- 주방가구 : 라이히트 - 벽/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2-1안	- 주방가구 : 라이히트 - 벽/상판 : 세라믹타일	142A	1,800,000	
					144A	1,300,000	
			2-2-1안	- 주방가구 : 라이히트 디자인 업그레이드 (식탁미포함, 후드 변경 포함) - 벽/상판 : 세라믹타일	142A	31,900,000	견본주택 설치안
			2-2-2안	- 주방가구 : 라이히트 디자인 업그레이드	142A	33,000,000	

				(식탁포함, 후드 변경 포함) - 벽/상판 : 세라믹타일			
			2-2안	- 주방가구 : 라이히트 디자인 업그레이드 (후드변경포함) - 벽/상판 : 세라믹타일	144A	22,500,000	유리장식장 제외
			2-3안	- 주방가구 : 불탑(수전, 싱크볼, 후드 변경 포함) - 상판 : 스테인레스 스틸 (벽 : 가구 마감)	142A	179,000,000	
					144A	127,000,000	포켓슬라이딩장 제외
	177A 182A/B	- 주방가구 : 라이히트 디자인 업그레이드 - 벽/상판 : 세라믹타일	- 주방가구 : 불탑(수전, 싱크볼, 후드 변경 포함) - 상판 : 스테인레스 스틸 (벽 : 가구 마감)		177A	119,000,000	포켓슬라이딩장 제외
					182A	179,000,000	
					182B	179,000,000	

-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마감재 및 수납장의 구성, 세부 형태(규격, 하드웨어, 액세서리 위치 및 사양)가 상이합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조명 및 콘센트의 위치 및 사양, 규격 등이 상이합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후드 및 싱크볼 제조사, 규격 및 세부사양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일체형 조명의 전원 및 콘센트 설치로 인해 수납 공간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방특화 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세라믹타일 및 스테인레스 스틸은 재료의 물성에 따라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특화 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84A, 112A/B, 122A 주방 창호 프레임은 침실과 동일한 색상(화이트계열)으로 마감됩니다.
- 84A/B, 112A/B, 122A타입의 후드는 옵션 유무 관계없이, AIRONE사의 ITACA 후드가 설치됩니다.
- 142A, 144A타입의 후드는 기본으로 AIRONE사의 VESTA 후드가 설치되며, 라이히트 옵션 선택 시 AIRONE사의 LORELEY60 후드가 설치되고 불탑 옵션 선택 시 FAMEC사의 ALTAIR / wall 600 후드가 설치됩니다. (보조주방은 국산후드가 설치됩니다.)
- 177A, 182A/B 타입의 후드는 기본으로 AIRONE사의 ITACA 후드가 설치되며, 불탑 옵션 선택 시 FALMEC사의 ALTAIR / wall 600 후드가 설치됩니다.(보조주방은 국산후드가 설치됩니다.)
- 타입 및 옵션별로 렌지후드의 제조사 및 모델명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설치되는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조작부 위치 및 설치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본제공되는 수전은 한스그로헤사의 #72800 수전이 설치되며, 불탑 옵션 선택 시 #73837 수전으로 변경됩니다. (142A, 144A, 177A ,182A/B 및 펜트세대 보조주방은 국산수전이 설치됩니다.)

▌전동커튼레일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2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전동 커튼 레일	전 타입	- 미설치	- 전동커튼	84A	600,000	-
				84B	1,700,000	-
				112A	1,200,000	-
				112B	1,700,000	-
				122A	1,700,000	-
				142A	1,700,000	-
				144A	2,300,000	-
				177A	1,200,000	
				182A	2,300,000	
				182B	1,700,000	
				227A	1,300,000	
				243B	1,900,000	
				243C	1,700,000	
				243D	1,900,000	
				243E	1,700,000	

- 옵션 선택 시 전동커튼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설계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설치 방향에 대해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옵션 선택 시 커튼 박스에 전동커튼레일 작동을 위한 전원/통신선이 노출됩니다.

• 옵션 선택 시 커튼은 별도 제공되지 않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커튼은 전시품입니다.

▌3컬럼 패키지 냉장고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2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3컬럼 패키지 냉장고	전 타입	- 미설치	2-1안	- 삼성전자 비스포크 3컬럼 냉장고 (냉동/냉장/김치) RR40C7995AP/RZ34C7865AP/RQ34C7945AP	전 타입	5,200,000	새틴베이지 패널
			2-2안	- 데이코 3컬럼 냉장고 (냉동/냉장/김치) DRR24981RAP/DRZ249801LAP/DRQ24982RAP	전 타입	31,300,000	STS 패널

• 냉장고 수납장은 타입별로 형태 및 구성이 상이하며, 냉장고 옵션 및 주방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수납장의 형태, 구성 및 세부규격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면 구성 및 냉장고 선택에 따라 도어 문열림 방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설치 규격에 따라 가구장 세부 규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스포크 냉장고 패키지는 냉동고(RZ34C7865AP), 냉장고(RR40C7995AP), 김치냉장고(RQ34C7945AP)로 구성되며, 각 냉장고의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비스포크 냉장고 및 데이코 냉장고 패키지의 문열림 방향은 견본주택 기준으로 설치되며, 임의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비스포크 3컬럼 냉장고의 전면 패널 마감재는 새틴베이지 색상으로 설치됩니다.
• 데이코 3컬럼 냉장고의 전면 패널 마감재는 자체 STS 마감으로 설치됩니다.

▌빌트인 냉장고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2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냉장고	142A, 144A, 177A, 182A, 182B, 227A, 243B, 243C, 243D, 243E	- 미설치(수납장)	2-1안	- 삼성전자 빌트인 콤비냉장고 / RL2640Z(Y)BBEC	700,000	가구 패널 마감
			2-2안	- 데이코 1컬럼 냉장고 / DRR24981RAP	10,000,000	STS 패널

• 냉장고 수납장은 타입별로 형태 및 구성이 상이하며, 냉장고 옵션 및 주방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수납장의 형태, 구성 및 세부규격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면 구성 및 냉장고 선택에 따라 도어 문열림 방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옵션별 냉장고 설치 규격에 따라 가구장 두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콤비냉장고 및 데이코 냉장고의 문열림 방향은 견본주택 기준으로 설치되며, 임의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빌트인 콤비냉장고의 전면 마감재는 가구패널로 마감되며, 주방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가 변경됩니다.
• 데이코 1컬럼 냉장고의 전면 패널 마감재는 자체 STS 마감으로 설치됩니다.

▌와인 냉장고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2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와인	142A, 144A,	- 미설치(수납장)	- 데이코 와인 냉장고 / DRW24980RAP	12,500,000	STS 패널

냉장고	177A, 182A, 182B, 227A, 243B, 243C, 243D, 243E				

- 냉장고 수납장은 타입별로 형태 및 구성이 상이하며, 냉장고 옵션 및 주방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수납장의 형태, 구성 및 세부규격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면 구성 및 냉장고 선택에 따라 도어 문열림 방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설치 규격에 따라 가구장 세부 규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데이코 와인냉장고의 문열림 방향은 견본주택 기준으로 설치되며, 임의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데이코 와인냉장고의 전면 패널 마감재는 자체 STS 마감으로 설치됩니다.

▌빌트인가전류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2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전기쿡탑 (주방)	전 타입	- 삼성전자 3구 인덕션 NZ63B5056AK	- 밀레 4구 인덕션 / KM7363FL		1,000,000	
전기쿡탑 (보조주방)	142A, 144A, 177A, 182A, 182B, 227A, 243B, 243C, 243D, 243E	- 삼성전자 3구 인덕션 NZ63B5056AK	- 밀레 4구 인덕션 / KM7363FL		1,000,000	
전기오븐	전 타입	- 미설치	2-1안	- 엘지전자 / MZ941CLCAT	850,000	
			2-2안	- 밀레 / H7440BM	3,200,000	
식기세척기	전 타입	- 미설치	2-1안	- 엘지전자 / DIE6PT	1,400,000	가구패널 마감
			2-2안	- 밀레 / G7964SCVI	4,100,000	가구패널 마감
천장형 제습기	84A/B, 112A/B, 122A, 142A, 144A	- 미설치	- 가야 / KY-1005P		830,000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선택 불가
욕실 복합 환풍기	84A/B, 112A/B, 122A	- 미설치	- 힘펠 휴젠뜨3 1개소(욕실1) / FHD3-C150P MT		650,000	
	142A, 144A, 182B	- 미설치	- 힘펠 휴젠뜨3 2개소(욕실1, 3) / FHD3-C150P MT		1,300,000	
	177A, 182A, 227A, 243B, 243C, 243D, 243E	- 미설치	- 힘펠 휴젠뜨3 3개소(욕실 1, 2, 3) / FHD3-C150P MT		1,950,000	

- 쿡탑 옵션유무와 상관없이 취사용 가스배관은 주방에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상판에 가스배관용 원형 타공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식기세척기 선택 시 전면 마감재는 가구 패널 마감으로 설치됩니다.
-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옵션 미선택 시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상기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 및 세대분전반의 차단기가 별도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천장형제습기는 드레스룸 특화 옵션 옵션형(2안) 선택 시 포함된 품목으로 중복 선택 불가합니다.
- 전장형제습기는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제습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며, 사용 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 기본형(1안) 선택 시 일반 욕실배기팬이 설치됩니다.
- 욕실복합환풍기 옵션형(2안)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반 욕실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 욕실복합환풍기의 설치위치는 주택형에 따라 상이하며, 동일 주택형인 경우에도 천장 내 설비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의 선택 개수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일부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2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시스템 에어컨	84A/B	- 미설치	2-1안	- 일반형 2개소(거실 + 침실1)	3,200,000	무풍형
			2-2안	- 일반형 4개소(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5,600,000	무풍형
			2-3안	- 고급형 2개소(거실 + 침실1)	4,500,000	인피니트형
			2-4안	- 고급형 4개소(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8,000,000	인피니트형
	112A/B	- 미설치	2-1안	- 일반형 3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4,600,000	무풍형
			2-2안	- 일반형 5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7,000,000	무풍형
			2-3안	- 고급형 3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6,600,000	인피니트형
			2-4안	- 고급형 5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9,900,000	인피니트형
	122A	- 미설치	2-1안	- 일반형 3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4,700,000	무풍형
			2-2안	- 일반형 5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7,000,000	무풍형
			2-3안	- 고급형 3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6,500,000	인피니트형
			2-4안	- 고급형 5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9,800,000	인피니트형
	142A	- 미설치	2-1안	- 일반형 3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4,700,000	무풍형
			2-2안	- 일반형 5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7,000,000	무풍형
			2-3안	- 일반형 6개소(거실 + 주방 + 보조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8,000,000	무풍형
			2-4안	- 고급형 3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6,500,000	인피니트형
			2-5안	- 고급형 5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9,800,000	인피니트형
			2-6안	- 고급형 5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일반형 1개소 (보조주방)	11,100,000	인피니트형(보조주방외) 무풍형(보조주방)
	144A	- 미설치	2-1안	- 일반형 3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5,100,000	무풍형
			2-2안	- 일반형 5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7,400,000	무풍형

			2-3안	- 일반형 6개소(거실 + 주방 + 보조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8,600,000	무풍형
			2-4안	- 고급형 3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7,100,000	인피니트형
			2-5안	- 고급형 5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10,400,000	인피니트형
			2-6안	- 고급형 5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일반형 1개소 (보조주방)	11,700,000	인피니트형(보조주방외) 무풍형(보조주방)
	177A	- 미설치	2-1안	- 일반형 3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5,300,000	무풍형
			2-2안	- 일반형 5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7,900,000	무풍형
			2-3안	- 일반형 6개소(거실 + 주방 + 보조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9,000,000	무풍형
			2-4안	- 고급형 3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7,300,000	인피니트형
			2-5안	- 고급형 5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11,000,000	인피니트형
			2-6안	- 고급형 5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일반형1개소 (보조주방)	12,200,000	인피니트형(보조주방외) 무풍형(보조주방)
	182A	- 미설치	2-1안	- 일반형 3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5,100,000	무풍형
			2-2안	- 일반형 5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7,900,000	무풍형
			2-3안	- 일반형 6개소(거실 + 주방 + 보조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9,100,000	무풍형
			2-4안	- 고급형 3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7,200,000	인피니트형
			2-5안	- 고급형 5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11,100,000	인피니트형
			2-6안	- 고급형 5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일반형 1개소 (보조주방)	12,300,000	인피니트형(보조주방외) 무풍형(보조주방)
	182B	- 미설치	2-1안	- 일반형 3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5,100,000	무풍형
			2-2안	- 일반형 6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8,900,000	무풍형
			2-3안	- 일반형 7개소(거실 + 주방 +보조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10,200,000	무풍형
			2-4안	- 고급형 3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7,200,000	인피니트형
			2-5안	- 고급형 6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12,700,000	인피니트형
			2-6안	- 고급형 6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일반형 1개소 (보조주방)	13,900,000	인피니트형(보조주방외) 무풍형(보조주방)
	227A, 243B, 243C, 243D, 243E	- 미설치	2-1안	- 일반형 4개소(거실1 + 거실2 + 주방 + 침실1)	6,800,000	무풍형
			2-2안	- 일반형 7개소(거실1 + 거실2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10,600,000	무풍형

			2-3안	- 일반형 8개소(거실1 + 거실2 + 주방 + 보조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12,100,000	무풍형
			2-4안	- 고급형 4개소(거실1 + 거실2 + 주방 + 침실1)	9,400,000	인피니트형
			2-5안	- 고급형 7개소(거실1 + 거실2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14,900,000	인피니트형
			2-6안	- 고급형 7개소(거실1 + 거실2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일반형 1개소(보조주방)	16,400,000	인피니트형(보조주방외) 무풍형(보조주방)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단종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냉매배관 2개소(거실, 침실1)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침실1에는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가 시공되며 거실에는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견본주택 설치제품(판넬 등)과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될 예정이나, 단종 또는 신제품 출시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조주방 내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 (142A, 144A, 177A, 182A,B, 227A, 243B, 243C, 243D, 243E) 실내기 배치 및 실외기 용량으로 인해 고급형(인피니트형) 선택이 불가하며, 일반형(무풍형)으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시스템 청정환기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2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시스템 청정환기	84A/B, 112A/B	- 미설치	2-1안	- 2개소(거실 + 침실1)	1,980,000	
			2-2안	- 4개소(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3,940,000	
	122A, 142A, 144A, 177A, 182A	- 미설치	2-1안	- 3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2,960,000	
			2-2안	- 5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4,920,000	
	182B	- 미설치	2-1안	- 3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2,960,000	
			2-2안	- 6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5,900,000	
	227A, 243B, 243C, 243D, 243E	- 미설치	2-1안	- 4개소(거실1 + 거실2 + 주방 + 침실1)	3,940,000	
			2-2안	- 7개소(거실1 + 거실2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6,880,000	

- 시스템청정환기 작동에 따른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설치에 따라 미설치 세대와 환기 디퓨져의 설치 개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설치에 따라 미설치 세대와 스프링클러, 감지기, 조명기구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는 무선리코몬으로 제어하며, 장비 1대당 무선리모콘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사용에 따라 주기적으로 필터 교환 등 관리가 필요하며, 소모품 교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 사항을 계약 전 반드시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통사항

구분	내 용
일반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구비서류 등의 내용 변조 행위로 주택공급질서 교란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의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샤시, 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 전 사업부지를 방문하시어 주변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악취, 혐오시설 유무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단지 내 각종 시설(근린생활시설,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내 구조물 및 장식품 등)의 형태(평면, 입면 등), 색상 및 마감재 변경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시설 간 대지경계가 없는 공유토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다른 구획 및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 표현된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된 참고용 자료임을 인지하여야 하며, 색채디자인 등은 외부 조명 및 적용면의 크기에 따라 달라 보이는 착시가 있을 수 있으며, 단위세대 평면도는 주동 동호별 라인에 따라 외부 마감재가 상이할 수 있어 이는 배제하여 표현되어 있으며,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 시공시 입면차별화 및 기능개선, 사인물(BI 등) 설치 등을 위하여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거실과 침실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업) 과정 및 실공사 시 일부 허가도서의 불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구조 상세해석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부재의 단면 및 주근 규격, 배근간격 등의 변경 등 품질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사 진행 중에는 각종 공정별 공사방법에 대해 적법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공법변경 등은 시공사 고유권한임을 인지하고, 공법의 적정성 여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인허가	• 본 공고문에 미 기재된 내용 및 오기된 내용에 대하여는「주택법」,「건축법」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재사항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는 반드시 공급계약 시 사업주체로부터 분양보증약관 등 보증내용(분양보증 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 포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확인(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분양홍보물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에 사용된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에 사용된 시공사의 브랜드는 시공사의 소유로서, 브랜드를 포함한 아파트의 명칭을 시공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색채, 형태(외벽 및 측벽 줄눈, 저층부 및 출입구 디자인,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디자인, 옥상 및 옥탑 구조물,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내 조형물, 세대 및 부대시설 창호 크기 포함),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심의(또는 자문) 법규의 변경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옥상 및 옥탑 구조물의 경우 구조검토 등을 통해 재료 및 마감, 부재의 크기, 디자인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및 기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향후 변경사항은 고지 예정으로 추후 변경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인허가과정, 공부정리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 대지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견본주택, 아파트배치,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각종 인쇄물상의 구획선, 아파트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거부 대지비율 면적을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고려한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 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지만, 인·허가 과정 및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입주민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 분양 홍보자료 및 각종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주변 환경 및 개발계획의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등), 광역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아파트 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부지 및 시공 현황과 측량 결과, 각종 평가(심의) 및 인허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와 이미지 등은 예정 사항으로 해당 주관사 또는 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의 개발 예정 부지를 포함한 주변 환경의 이미지와 영상은 계획·예정사항에 대한 표현·구현의 한계로 인해 실제와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사업부지를 방문하시어 주변 환경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관련 법규 및 인허가 협의사항에 따른 비상차량동선 및 접근로 확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등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향후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없습니다. • 공공보행통로는 공공에 상시 개방되는 시설로서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는 단지 내부의 시설이나, 관계법령에 의거 공공에 상시 개방되는 시설로서 입주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 공공보행통로 및 공공보행통로 내 조형물, 조경 및 조경시설물, 미술장식품, 방음벽, 놀이시설, 휴게시설 등의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공동부담입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거치는 사항으로 계약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정압기 설비는 단지 내 위치할 수 있으며, 상세 설치 위치나 규모 등은 부산도시가스와 협의 후 시공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및 악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산도시가스와 협의 후 설치하는 도시가스 정압기 설비의 위치는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정압기 설치 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부산도시가스와 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본 건축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전체 장애인용 겸용으로 적용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따라 대지 주위 일부(1,317.43㎡, 추후 변경가능)는 보도, 자전거도로 및 화단 등의 사용을 위하여 주무관청인 수영구청을 권리자로 하는 구분지상권이 설정 됩니다(존속기간: 영구). 이와 관련하여, 향후 사업주체 및 수영구청 등을 상대로 별도의 임료(지상권 설정에 따른 보상금 등 포함) 청구 및 기타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의 민형사상의 청구나 민원제기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계약시 이에 대한 별도의 동의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지상권 설정 등기에 필요한 추가적인 서류 등을 사업주체가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 하여야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변현황	• 본 아파트 주변 현황은 개인차에 따라 주거환경(조망, 소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약자 및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 등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위탁자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의 개발 예정 부지를 포함한 주변 환경의 이미지와 영상은 계획·예정사항에 대한 표현·구현의 한계로 인해 실제와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사업부지를 방문하시어 주변환경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 시설물 및 주변 건물의 신축, 아파트 배치, 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로 인한 분진포함), 냄새,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으로 환경권, 사생활권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또는 계약 전에 사업부지 여건 및 주위 환경을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시 조건 조치사항에 따라 사업준공 시점 도로부 저층부 세대 소음을 실측하고 서측(황령대로) 및 남측(광안해변로) 약 320m 구간으로 방음벽이 18M 높이로 설치 될 예정이나, 향후 소음 실측 등을 통해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방음벽은 인허가 조건 조치사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단지 내 설치되며 방음벽 설치를 위해, 방음벽과 아파트 동 사이에 지지 구조물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 서측과 남측(황령대로, 광안해변로 인접) 사업경계부에 방음벽 설치예정임에 따라 분양홍보물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방음벽의 설치 위치 및 세대(102동~105동) 간섭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음벽 최종 시공 시 길이, 위치, 사양, 재질, 형태, 높이 및 구조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서측 및 남측 사업경계부 방음벽구간에는 통행의 편의를 위한 개구부가 설치될 예정이며 최종 시공 시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방음벽 설치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일부 세대의 조망 및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를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악취 등 주위 환경을 확인 바랍니다. (추후 소송 및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추후 소송 및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로에 면한 세대의 경우에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현황과 현장 여건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사업부지 현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장의 최초모집공고 및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주변 기반시설과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광역교통망 및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는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사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 본 아파트 단지의 건립 예정 세대 규모는 835세대로,「주택법」제35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본 아파트 단지 복리시설 내에는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동법 시행령」제19조의 2, 교육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해당 어린이집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와 체결할 예정이며,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해당 협약 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가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자동 포괄 승계될 예정입니다. • 다만,「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동법 시행령」제19조의2에 의거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해당 어린이집 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와 관할 지자체인 부산광역시 수영구간 협약을 통해 단지 복리시설 내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중에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그 이후「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반대함을 서면으로 표시하여 해당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관련 법규 및 규정, 관할 행정기관 및 관할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해 관할 지자체인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투입한 비용에 대한 보상책임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관련 법규 및 관할 행정기관인 교육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 교육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사업주체와 관할 지자체인 부산광역시 수영구간 협약을 통해 당 아파트 입주민 자녀에게 어린이집 정원의 30~7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입소 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민 자녀 우선입소 배정이후 잔여 인원은 입주민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되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교육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부산광역시 수영구(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원장)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 상기 안내 내용에도 불구하고,「영유아보육법」등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 관할 행정기관인 교육부의 지침 등이 변경될 경우, 해당 변경된 법령·지침 등을 우선 적용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함께돌봄센터	• 본 아파트 단지의 건립 예정 세대 규모는 835세대로, 본 아파트 단지 복리시설 내에는「주택법」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55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아동복지법」제44조의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해당 센터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제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로 직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해당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와 체결할 예정이고,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해당 협약 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가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자동 포괄 승계될 예정입니다. • 다만, 해당 단지의 관할 지자체인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지역의 시설 설치 현황, 지역 돌봄수요 등을 고려할 때 복리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거나 입주(예정)자등의 과반수가 해당 센터의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와 관할 지자체인 부산광역시 수영구간 협약을 통해 단지 복리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중에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그 이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반대함을 서면으로 표시하여 해당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관련 법규 및 규정, 관할 행정기관의 지침에 따라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를 위해 관할 지자체인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투입한 비용에 대한 보상책임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는 관련 법규 및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민 자녀에게 다함께돌봄센터 정원의 30~7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입소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민 자녀 우선입소 배정 이후 잔여 인원은 단지 입주민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되며, 개소 후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다함께돌봄센터 관리비는 향후 부산광역시 수영구(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센터장)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및 사용료,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 상기 안내 내용에도 불구하고,「아동복지법」등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지침 등이 변경될 경우, 해당 변경된 법령·지침 등을 우선 적용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	• 초등학교는 남천초등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며, 중학생은 남부(남천중학교, 대천중학교), 수영중학교로 수용가능하며 고등학생은 해운대 고등학군으로 수용가능하나, 향후 학생 수 변화 추이와 본 지역의 주택개발과 인근 지역 개발경과 등의 배치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배치사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학생 배정계획의 확정은 본 단지 인근의 상황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주택조례에 따라 공동육아시설(공동육아나눔터)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시설계획	• 근린생활시설 입점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업종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근린생활시설 옥상층의 옥상조경 및 부속시설(실외기 등) 설치로 인하여, 일부 주변 저층부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4동 1,2,5호세대 전면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실외기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 저층부세대는 소음으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바닥포장, 지상 및 지하의 주동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의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물 및 크기,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도로와의 경계는 인·허가 관청의 지침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의 분양 모형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단지 외부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이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허용오차 내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공유시설물에 근접한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놀이터, 수공간, 휴게시설 등) • 단지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급배기타워 및 재활용보관시설, 재활용 창고, 수목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수목식재,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으로 인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내부계획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옥외시설물, 주차장 진출입구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차량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옥상 난간 턱 높이 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출입구(주출입구, 부출입구, 보행자 출입구)의 선형 및 레벨은 현황에 맞춰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 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해 한전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용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각 동 하부 지상1층에 동별 1개소씩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인허가 진행 시 결정된 사항으로 각 세대별 이동거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에서는 환경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 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저하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세대 내에서 장비를 통해 투입 및 처리 가능하며, 지상1층에 동별로 옥외투입구, RFID감량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배출판넬이 공동주택과 각 동별 1개소씩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수거차량을 통해 해당 지자체 수거일에 배출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 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101동, 102동 사이에 어린이놀이터 계획으로 소음, 진동, 조망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공지반 녹지 하부에는 우수침투수에 대한 원활한 배수와 수목의 뿌리 침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근기능으로 누름콘크리트와 자갈 배수층으로 시공할 예정이며, 이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배수/방근 자재 등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동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보관소 등의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내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고층 세대는 옥상 경관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면 커튼월룩 적용으로 인해 인접 세대는 빛 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 (1층)과 지하층 이용편의 또는 피난거리 확보를 위해 저층부용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실시공 과정에서 위치 및 형태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양홍보물을 통해 해당 시설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 설비 등이 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아파트 옥탑층 시설물(의장용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이 설치될 경우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층 및 외부 난간은 주택법 등의 관련 법규 높이 기준에 따라 투시형 철재난간 또는 폐쇄형 난간으로 설치되었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 하에 있으며, 시공사에 하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근접한 세대는 승강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인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4동의 승강기 중 1대는 40층 부대복리시설 이용을 위해 설치될 예정으로 해당 부대시설 전용승강기는 상시에는 지하5층~지하2층, 지상1층과 40층에서만 정차합니다. 104동의 나머지 승강기는 40층에서 미정차하기 때문에 104동 입주민도 40층의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부대시설전용 승강기 정차공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단, 비상시에는 모든 승강기가 40층 운행). 또한 공용부(지하5층~지하2층) 및 지상1층의 부대복리시설 전용승강기는 다른 동 입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 이용 결정에 의해 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인허가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나,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ry Are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품질 및 유지관리 성능을 고려하여 전동 전이층 부분의 구조 설계의 경우 개선,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용 자전거보관대는 각 동 지상1층에 분산 설치되어 있으며, 동별로 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팬룸 등의 환기를 위해 지상 돌출물(Dry Area)이 설치되어 있어 인접한 실은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식재 및 시설물, 포장, 야간조명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르며 입주자 부담입니다.
- 허가도면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의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부출입구 인근에 학원차량 등의 주정차를 위한 드롭존이 계획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 드롭존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도로선형, 주정차 가능대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민 보행안전 등을 고려하여, 드롭존은 삭제 또는 이동될 수 있음)
- 차량 출입구(비상차량동선 포함)와 보행자 출입구로 인한 인접세대의 사생활 및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공 시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조경 수목 및 시설물의 위치, 포장 범위,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 및 사면, 자연석, 계단, 램프의 형태 및 종류, 노출범위,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도(CG, 모형 등)의 바닥 선형, 마감패턴, 칼라 등은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공공보행통로 내 조형물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실외 어린이놀이터 등) 및 보행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담장 및 휀스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은 추후 결정 예정입니다. •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구획 등으로 조경 및 시설물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ry Area)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소음,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목 및 시설물, 포장 재질 및 패턴 등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위치, 종류,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옥상층의 부속시설(실외기 등) 설치 및 추후 유지관리로 인하여, 일부 주변 저층부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문주가 설치될 수 있으며,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시공 상의 이유로 형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주, 배기탑 등 각종 시설물, 지상 구조물의 크기 또는 위치 변경에 의해 조경면적 및 식재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에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 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에 수질정화설비를 반영할 예정이나, 이는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질상태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수질은 담수 기간, 이용횟수 등 운영 및 관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경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에 면한 세대는 필로티 시설의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에 면한 부위의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인공지반 녹지 하부에는 우수침투수에 대한 원활한 배수와 수목의 뿌리 침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근기능으로 자갈배수층을 시공할 예정이며, 이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배수/방근 자재 등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시 심의 의견 및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단지 내 중앙 축으로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상가 이용객 및 외부 보행자 통행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공보행통로에 설치되는 조형물은 시공상의 이유로 크기, 위치, 형태(평면, 입면 등), 색상 및 마감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단지 외부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및 학부모의 입원을 위한 단지 내 출입 허용 및 통행편의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면·색채 ·창호	• 옥탑, 지붕,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높이)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 동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 지붕 및 옥탑 구조물은 향후 인허가 기관의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상 장식탑은 시공 현장 여건에 따라 형태가 조정되고, 기둥 및 벽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건축심의 등 인허가에 따라 결정된 건축물의 외장재가 일부 단위세대의 시야 및 조망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단지모형에서 해당 호수의 간섭정도를 필히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심의에 따라 결정된 건축물의 외장재가 창호와 간섭이 심한 일부 단위세대의 창호는 개폐방향 또는 형태가 바뀔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창호와 간섭이 경미한 단위세대 계약자 분들은 개폐방향 또는 형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보를 위해 84A타입, 84B타입, 112A타입, 122A타입 전 세대의 침실2와 침실3 직접외기 창호와 142A타입 2호라인의 침실2와 침실3 직접외기 창호에는 집광채광루버가 설치될 예정이며, 커튼박스 아래로 일부 장치가 노출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부대 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은 지하2층, 지상1층 및 104동 지상 40층에 설치되고, 근린생활시설은 지하1층, 지하2층에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세대는 이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4동 지상40층의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다른 동 주민의 승강기 및 홀 진입에 따른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4동과 105동 사이 지하2층에는 식음시설이 설치 예정으로 음식물 처리에 따른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4동과 105동 사이 지하2층에 설치 예정인 식음시설은 운영 및 서비스 방식에 따라 내부평면계획 및 입면 특화디자인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과 105동 사이 지하2층에 설치 예정인 **금고시설(볼트1392) 및 세탁서비스(그린어스)** 시설은 입주자 편의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전에 사전운영을 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후 운영방침에 따라 운영 방식을 결정하여 운영됩니다. • 어린이집과 경로당,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은 외부인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에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등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 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및 실별 용도 등이 인허가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각 실의 천장고는 실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천장 내 기계설비 배관 및 덕트, 소방 및 전기 트레이 등으로 유효 천장고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실 등 부대시설과 인접세대는 각 시설물의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급수, 급탕, 난방, 가스요금 등은 입주민의 공동요금으로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핑 후 메인배수관에 연결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사로가 생성 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외부 디자인과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설비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세부 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사용공간을 제공하고 시설물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 시공자는 준공 후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 후 최대 36개월)동안 현장 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집 및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공동육아나눔터 등은 지자체 협의 및 사용 편의를 위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시설의 경우 전문위탁관리업체와 MOU를 체결, 운영 예정이나 사업주체와 전문위탁관리업체 간 협의 및 본계약 과정에서 서비스 개시시점,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해 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와 협약을 맺은 전문위탁관리업체가 추후 변경될 경우 서비스 운영 종료 및 원활한 향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공된 공사부위, 추가 설치된 전자제품 및 집기/비품은 주민공동시설에서 철거 및 반납될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용설비 및 시스템	• 본 건물의 소방관련 시스템 및 설비는 본 시공 시 소방법 기준에 따라 허가도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요 방범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고해상도 CCTV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으로 해당 시스템 구성에 따라 장비의 사양이 인허가 시 제출되었던 사양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우·오수 배수시설, 저수조, 빗물저수조, 기전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 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저수조, 제연휀룸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은 승강기 기계실,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동의 옥상에는 TV안테나 및 통신설비장치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 공용부에 통신사 중계장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층에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설치됨에 따라 저층 일부 세대 소음, 진동 및 조망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및 공용부 일부에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입주자 공동시설, 저수조, 빗물처리시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상의 모든 Dry Area(주차장 및 발전기실, 기계실 환기용, 제연용)는 소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인접동 입주민께서는 모형과 안내자료 상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위치 및 형태는 공사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어 계약 전 위치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법적 기준 내) • 본 건물의 복도 천장고는 시공 시 일부 낮아질 수 있고,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의 지하에는 지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제습기(지하층) 및 공기청정기(동출입구)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 환기설비로 인하여 사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진동, 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출입구 근처, 필로티 내, 주동 주변으로 제연휀룸 Dry Area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수 공급을 위한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화전 위치는 법적 사항에 맞춰 그 위치가 계획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에 따른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전체 지붕 우수 처리를 위해 공용복도 및 전용공간의 천장 내부로 우수관이 관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정기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실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 소유의 전기설비, 전기인입 맨홀 및 통신인입 맨홀이 지상1층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및 지상 환기창(또는 녹지구간)에 이동통신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여건상 단지 내 이동통신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기간통신사업자(KT, SKT, LGU+ 등)가 전파측정 등을 실시하고, 일부 동 옥상(또는 옥탑)층에 이동통신중계장치 및 안테나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빛의 산란, 미관저해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진출입구에 인접한 동은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구에 따라 소음 및 불빛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이 설치되므로 소음 및 진동, 냄새가 특히 발전기실에 인접한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인 시험가동 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공용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헬리포트가 101동 옥상에 설치되고, 102동~105동 옥상에는 인명구조공간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근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발생 등으로 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1, 102, 105동 옥탑에 근린생활시설 배기 휀룸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근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냄새 및 분진 발생 등으로 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3동 옥탑에 소화용 고가수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비상가동 및 주기적인 시험가동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위치: 안테나 - 지붕층 : 101~105동 옥상 공용부(5개소), 중계장치 - 1. 지하2층: PIT(4개소) 2. 지붕층: 101~105동 옥상 공용부(5개소) • 동별, 라인별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의 대수, 인승, 속도 등은 관계법규가 정한 기준 및 심의조건 등에 맞추어 계획되었으며, 층수 및 사용세대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의로 조정하지 않아 동별, 라인별로 사용인수 대비 대수 및 인승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되거나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각 동 최상층에 승강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층수 차이로 인해 일부 세대 침실은 기계실과 인접하여 배치됨) 될 수 있고,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소의 사용요금 및 전기 기본료는 사용자 부담 방식으로 요금 납부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기본료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호실 면적에 따라 균등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은 지하3층 동출입구 주변에 설치 될 예정이며 택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해 진출입시 소음, 매연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공용 태양광 패널이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시공여건에 따라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측벽에 피뢰침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	•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는 타 용도와 공용으로 사용하며, 지하주차장에서 용도별 영역을 위해 차단기가 설치됩니다. •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입은 황령대로509번길과 광안해변로15번길에서 가능합니다. • 아파트는 지하3층에서 지하5층의 주차장을 사용하며, 주차대수 1,812대(경형 및 장애인주차 포함)로 계획 되어있습니다. • 지하3층의 주차는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과 영역을 나누어 사용하며, 지하4~5층은 공동주택 주차 영역으로 사용합니다. • 확장형 주차비율 및 경형 주차비율은 법적 기준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 장비 등이 노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위치와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위치는 공용홀로부터의 접근거리는 주동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설비의 이동은 불가합니다. •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 법적 의무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주차구획은 법적개소에 맞게 계획하였으며, 추후 설치위치 및 개소는 법적개소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 이용 가능한 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 기기의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요금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동의 전·후 측벽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옥상 바닥마감은 물 구배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 일부 주차구역은 주차 후 동 출입구까지 동선 길이가 길어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로 인한 통행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어서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행하고 관리 차원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의 차로는 직각주차와 접해있는 차로의 경우 법규기준 6m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차로의 유효높이는 2.3m 이상, 주차구획의 유효높이는 2.1m 이상, 지하3층의 택배차량의 이동 동선에 해당하는 차로는 유효높이 2.7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량 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내에 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하수도요금 부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를 적용하였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공법 및 구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되며, 일부는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각종 배관, 배선 및 가스배관 등의 루트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하층 내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내부에 설치되는 집수정 및 집수정의 펌프로 인하여, 펌프 작동 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여 인접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집수정 펌프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저층부 세대는 이를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시설물(환기팬, Dry Area)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제연실(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합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별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근린 생활시설	• 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 내 일정 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허용오차 내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차후 근린생활시설 분양 전, 일부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동주택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별도 동의 없이 개선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구획은 지하3층에 계획하였으며 아파트 주차구획과 구분되어 있으나, 황령대로 509번길의 단지 주 출입구 및 램프를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폐기물보관소는 지하2층 101동 코어 인근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하는 업종에 따라 소음 및 악취 발생에 따른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배관 일부가 부대복리시설의 천장에서 이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각 세대의 천장공간 내부에 인접세대를 위한 가스배관 및 에어컨배관, 위생배관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추후 임의로 해당 시설을 철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구분	내 용
평면	• 공급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각 세대 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향후 층간/세대 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모든 마감자재는 시공 시기,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세대별로 발코니 세대 간 조건 및 발코니 변화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사업계획(변경) 승인 기준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위치, 층수, 주변 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 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 실시공 시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견본주택과 다소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는 시공상 하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부 일부 비내력벽 (침실,욕실,PD, 발코니 등의 부분)은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ALC블록, 조적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날개벽체 또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나 결로현상은 입주자의 관리상의 문제이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시공 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결로 및 이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과다한 습도 유지와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해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욕실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 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부득이 사용시 환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아파트 단위세대 기본 천장고는 84A/B, 112A/B, 122A, 142A 타입의 경우 2.5m(거실, 침실 기준),144A, 177A, 182A/B 타입의 경우 2.65m(거실 기준), 2.7m(침실 기준), 227A, 243B, 243C, 243D, 243E 타입의 경우 2.9m(거실, 침실 기준)이며, 현관, 복도, 주방 및 식당, 침실 일부 구간, 욕실, 실외기실, 발코니, 다용도실 등은 상이합니다. 또한, 실 시공 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 한도 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별 구조형식에 따른 바닥구조물 두께가 상이하여 생활환경조건이 차이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사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사와 당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되는 부대시설 및 조경 등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열재의 종류 및 성능은 법적기준 내에서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장롱, 붙박이장류)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단열재의 두께 등의 차이로 기타 홍보물에 표기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의 폭, 높이 차이, 전기 용량 차이, 크기 등으로 배치가 불가하거나 외부 창호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또는 공용부의 비내력 벽체는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실별로 조적 또는 경량벽체, 골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조합에 따른 동 평면상의 굴곡에 따라 인접세대에 의해 일조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 욕실 / 현관 등 단차 부위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창호 및 옥외공간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 시공 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면적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일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설치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 및 바닥구배에 의한 단차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도어와 루버의 크기, 재질, 색상, 디자인 등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외부 루버의 색상은 주동 색채 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동일 타입이라 하더라도 해당 세대의 위치에 따라 색상이 구분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확장형 침실의 직접외기 창호는 유리난간 일체형 PVC창호가 설치되며 (펜트하우스 테라스 출입창호 제외), 유리난간은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이중창의 외부창호는 유리난간이 설치되는 부위만 이동 개폐(슬라이딩식)가 가능하며, 유리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창호는 안전상 고정되어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불가능합니다. 유리난간대의 높이는 FL(바닥 마감재 상부 레벨) 기준 H:1,200 이상으로 일부 시공오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직접외기 창호는 실시공시 풍압실험, 구조검토 결과에 창호 높이, 프레임폭, 유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확장형의 창호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창호는 AL 및 PVC재질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창틀, 색상, 크기, 하드웨어, 유리/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창호사양(재질, 브랜드, 창틀, 색상, 크기, 하드웨어, 유리/개폐방향 등)이 확장 시 설치되는 창호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창호는 동일 세대 내, 재질별(AL, PVC) 특성에 따라 색상, 질감, 폭, 크기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창호 중 AL창호는 바람으로 인한 열림방지를 위한 보조잠금장치(2개소)가 적용 될 수 있으며 풍압검토 결과에 따라 사양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섀시는 층, 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 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창호공간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아 내외부 온도차로 인한 결로 및 결빙 등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가 필요하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배관의 위치, 수량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보일러실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 입상관 및 가스미터기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일러실에 가스 입상관 및 가스미터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 및 환기덕트는 노출배관 (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중 '입면·색채·창호'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는 외부 디자인에 의한 창호 가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중 '입면·색채·창호'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 섀시,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였고, 확장비용은 분양가에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일부 공간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입 (84A/B, 122A)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음식물쓰레기이송설비 설치를 위한 가구가 발코니에 설치되어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발코니에 설치됨에 따라 야기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항은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 안내자료에서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3동 38층 1, 4호 세대의 경우 거실, 주방에 상부층 세대 욕실 배치로 인해 생활소음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우수에 의한 물고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다용도실 및 보조주방의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마감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검구의 위치, 크기, 규격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 상부에 건조기를 직렬키트로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실의 천장 점검구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수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내기에서 발생된 결로가 바닥에 고일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세대 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시공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마감사양(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천장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 방식이 적용되며, 실외기실, 하향피난구실 또는 발코니에 전열교환기가 노출형으로 설치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실외기실 루버는 필히 닫힘 구조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스프링클러헤드 및 욕실배기 등 배관 설치를 위하여 거실 또는 침실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의 출입문의 형태, 재질, 열림 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은 세탁과 건조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습기가 높아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사용 시 배기팬을 가동시켜 주어야 합니다. • 세대 내부 다용도실, 하향식피난구실 또는 실외기실에 환기장치(전열교환기)의 설치로 다소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화재시 하부 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임의로 덮개 개방 시 하부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및 보안관련 경보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향식 피난구는 세대당 1개소 설치되며 위•아래층 교차 시공되며 시공 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피난구 케이스는 철재재질로 별도 마감이 없으며, 발코니 높은 턱 바닥 레벨에서 일부 돌출되어 설치됩니다. 피난구는 홀수층 짝수층의 위치가 다르게 설치되며 위층 세대의 피난구가 아래층 천장에 노출되는 구조로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장소에 향후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물의 설치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에 대해 시행 및 시공측은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건축법 시행령」제46조 및「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3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였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개폐시 경보음이 울리며, 각 세대내로의 임의출입이 불가능합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에 따른 소음 등이 생길 수 있으며 최하층(4층) 세대는 하부 PIT층으로 피난 가능합니다. • 다용도실이 외기에 면한 경우 단열재가 설치되며, 본 공사 시 단열재가 설치되는 벽면 및 천장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구간에는 마감 설치 방식에 따라 접합부가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외부 난간 형태 및 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이 계획된 발코니는 기본형에서도 급수, 배수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와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안내자료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 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설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의 조건상 세대 외부 창호는 풍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특수구조 PVC창호로 일반 PVC창호에 비해 프레임 등의 두께가 두꺼워 상대적으로 유리 면적이 좁은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방화문은 본 공사 시 방화성능향상 및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창호의 디자인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창호의 크기는 개방감 및 시공성 확보를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욕실	• 욕실 출입문은 본 공사시 PVC계통(ABS)도어로 시공되며, 침실 문짝 모서리 상·하부는 별도의 마감이 없을 수 있으며, 해당 재료의 특성에 따라 침실 문짝과 마감시트의 색상, 질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샤워부스 및 욕조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욕실은 샤워부스와 양변기실이 분리되어 있으며, 각각의 배기휀이 아닌 하나의 배기휀으로 동시에 배기될 수 있게 추가 디퓨저가 연결/설치됩니다. • 욕실 벽, 바닥 타일의 줄눈 위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줄눈 및 타일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내에 설치되는 바닥배수구의 규격, 크기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카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되며, 점검구의 위치, 크기, 개수 등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각 실별 코킹 시공부 부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장, 샤워부스 등 욕실가구의 색상, 규격, 형태, 하드웨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상부 또는 하부에 설치되는 조명 및 전선마감의 상세는 시공성 향상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하부장의 가구 뒷판은 배관설치로 인해 뒷판이 미시공되거나 타공될 수 있으며, 별도의 가림판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에 외부 창호가 설치되는 타입의 경우 주동 형태에 따라 세대 간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양홍보물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구 및 마감재	• 단위세대 마감재 기준은 주택형별로 구성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4A/B, 112A/B - 122A기준 / 144A - 142A기준 / 177A, 182B, 227A, 243B, 243C, 243D, 243E - 182A 기준)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타입의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부 가구(각종 일반가구, 주방가구, 욕실가구 등)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천장, 바닥, 배면 등)은 별도 마감이 없습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신발장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틀림ㆍ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바닥 마감재는 견본주택과 폭과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침실, 욕실 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안내자료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위치 및 크기, 개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창호는 AL 및 PVC재질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창틀, 색상, 크기, 하드웨어, 유리/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는 성능 향상 및 시공성 개선을 위해 일부 마감디테일 및 수납공간의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도어에 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휨 방지 부속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가구 배면에 추가 부속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문, PVC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 (예 : 목재, 인조대리석, 타일 등)는 자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 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 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제공되는 주방가구는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팝업 콘센트의 설치 유무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콘센트 본체 및 전선이 하부장에 노출되어 하부장 수납공간이 간섭될 수 있으며, 선반 구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 주방가구에 설치된 조리기구 행거, 선반 등은 본 공사 시 위치 및 색상, 크기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부타입 (142A, 144A, 177A, 182A/B) 보조주방에 설치되는 국산주방가구에 포함된 주방 상부장 하부 조명은 본공사시 제조사, 형태, 색상, 규격, 가림판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가구 수납장 상부에 점검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수납가구 및 시스템선반의 배치는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안목치수에 따라 일부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주방가구 및 수납가구의 내부 구성은 본공사 시 사용성 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 등이 설치되는 가구는 점검구 설치 및 안정기 매립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장식장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시 가구변형 및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내부에서 전열 가전제품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 시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강마루(섬유판)의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인조석(현관 디딤판, 화장대 상판, 욕실 비누턱, 주방 상판, 재료분리대 등)은 무늬와 색상, 줄눈나누기 간격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 시 연결부위가 발생(세대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되며, 제품 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몰딩과 걸레받이는 본 공사 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견본주택의 시공 자재와는 상이할 수 있음)

	• 주택형별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개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냉장고장의 규격은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라며, 옵션 미선택 시 냉장고가 (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목창호, 시트판넬, 가구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본 공사 시 Stapler Tacker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판넬 나누기 및 치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 방화문 및 세대내 방화문은 본 공사 시 방화성능 향상 등을 위하여 문짝/프레임/손잡이/하드웨어의 디자인 및 사양,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시공 부위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타일 유상옵션 선택 시 줄눈사이는 음식물이 들어가거나 생활하는 과정에서 쉽게 오염, 변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루 선택시와 다르게 아래층 층간소음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바닥, 거실/복도 벽체 및 욕실벽체, 바닥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마감재 모서리 부위에 재료분리대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 도어가 아니며, 유리슬라이딩도어는 본 공사 시 창호사양 및 규격, 프레임/손잡이/레일/레일집 등 하드웨어 사양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A/B타입 다용도실 등에 설치되는 폴딩도어는 기능성 도어가 아니므로 차음, 차폐, 차광 기능이 없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및 세라믹타일은 재료의 특성 상 이음매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 등의 마감재는 가공 및 생산방식에 따라 견본주택과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포켓도어의 프레임, 손잡이, 하드웨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타입별, 부위별로 목창호 규격 및 세부 디테일, 하드웨어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 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타일나누기 및 줄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고 및 실규격은 시공허용 범위 내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트판넬 마감부,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에는 걸레받이가 미시공 됩니다. • 세대 내 벽지 외 두께가 있는 마감재로 인하여 안목 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기기계설비	• 일부 단위세대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적정위치로 설계 및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된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분전반은 침실 또는 현관 등 관계법령에 따라 벽체에 노출되며, 단위세대 내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 기구류 등의 전기마감재 설치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전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통신 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동체 감지기는 최상층에 설치됩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안방에 설치될 수 있는 에어컨용 콘센트는 에어컨 실내기 조작 전원용이며, 실외기용 대용량 전원은 반드시 실외기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단위세대 조명기구 공사 중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단위세대 간접 조명 공사 시, 조도개선을 위해 제품의 색온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됩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제품, 세대 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공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벽걸이TV 설치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회사 제품의 문제로 인지하고 제조사에 A/S 요청을 해야 합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및 설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월패드,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주보는 미러형 타입의 경우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의 위치가 간섭에 의하여 세대 간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 견본주택보다 훨씬 이동되어 설치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바랍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른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월패드 및 스마트스위치의 기능은 참고용으로 현장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본 공사시 해당 기능은 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되며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특화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에는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 할 예정이며,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난방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입 팬트리 가구장 및 수납장 하부에는 난방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하부공간 수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용 설비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 난방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 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주방에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용 투입구가 설치되며,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한 기본요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의 사용 빈도에 따라 추가적인 요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우물천장은 천장 내 설비배관으로 인하여 천장고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튼박스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배수구, 수전 및 액세서리류 등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연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전세대 인덕션 방식의 전기쿡탑이 설치되며, 전기쿡탑 사용 시 인덕션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 조리 용기에 인덕션용 표시가 있더라도 도자기질 재질 또는 자성이 약한 용기의 경우 조리가 되지 않거나 전기쿡탑의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스배관은 가스보일러 사용을 위한 용도로만 설치되며, 가스쿡탑 사용을 고려한 가스 배관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가스쿡탑 사용 시에는 가스계량기에서 가스쿡탑까지 연결되는 가스배관 공사를 입주민 부담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렌지후드 인근 상부장에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수납공간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조작부가 렌지후드에 노출 부착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독립형 렌지후드 내부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공간이 부족할 시 천정속에 설치되어 점검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전기식으로 적용되며, 가스쿡탑으로 변경하여 사용 시에는 가스식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입주민 부담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본 냉매배관 2개소(거실, 침실1)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통신분전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디지털도어락, 소방설비류 등은 기능 및 디자인은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의 드레스룸, 팬트리, 욕실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나,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됩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욕실 천장 내 설치되는 급수급탕분배기는 상부세대용 분배기로서 반드시 확인 하시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는 관계법령 준수로 인한 배관 및 스프링클러 헤드가 노출되어 미관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상부에 상부세대의 설비 배관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 위치와 개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각종 설비배관의 노출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설치 또는 상층 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 천장 설치 또는 두가지 모두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대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은 AD를 통한 배기시설이 아닌, 세대별 당해층 직배기로 계획되어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과 발코니는 비난방구간으로 설치되는 수전 및 배수배관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세대 내 실외기, 우수/오수(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설비가 실외기실 천장 상부에 노출로 설치 될 예정(마감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이며 이는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환기 설비는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세대 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 날 수 있음),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 입상관 및 가스미터기의 위치는 다용도실 또는 실외기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본 시공 시 설치 위치는 마감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급/배기용)는 이해를 돕기위한 견본주택의 가시설물로, 실시공시 설계도면 및 관계 법규에 의해 시공될 예정입니다.
- 세대 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환기설비의 필터인 헤파필터는 연 1~2회 교체를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주기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상된 물건에 대한 보상등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당 현장은 욕실배관과 급수급탕분배기가 해당 층 하부에 설치되는 층하배관방식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추후 유지보수를 위하여 하부세대 욕실내 점검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조하부 및 샤워부스 바닥, 발코니, 일부 싱크대하부 공간 등은 욕실 난방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하층 세대의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급수급탕분배기의 설치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규격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의 배기 계획에 따라, 일부 양변기실과 샤워부스 내에는 디퓨저가 설치되어 1개 배기휀 가동을 통해 동시 배기될 수 있습니다.
- 세대온수분배기,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신발장, 창고장 또는 침실붙박이장의 하부 또는 배면,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으로 디퓨져는 거실과 각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중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일부 발코니에만 선홈통 및 배수구가 설치됩니다.
- 발코니와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장소, 실외기실 등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 및 환기덕트는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과 발코니는 비난방구간으로 설치되는 수전 및 배수배관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실외기실 바닥배수구는 동절기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한 봉수파괴로 냄새가 유입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물을 부어주는 등 입주자가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 위치와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각종 설비배관의 노출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일러가 설치되는 보일러실에 배수를 위한 선홈통이 설치됩니다.
- 모든 타입의 세대는 보일러가 설치되며, 겨울철 보일러 및 급수, 배수배관 등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창호 및 루버 등 열린 부위가 없도록 입주자께서 반드시 닫힘으로 관리하여 • 동파를 예방하셔야 합니다.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절기 결로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수건걸이 설치 공간의 폭 차이로 인해 링타입과 바타입이 선별적으로 설치되어 타입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서비스 중 일부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은 단지 내에 고정 IP 회선이 연결되어야 가능합니다.
- 고정 IP는 3년간 무상서비스로 공급되며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서비스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 3년간 무상서비스로 제공된 후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난방, 환기, 쿡탑열원차단 등) 외에 IoT 가전 연동제품(소비자가 별도구매)은 푸르지오 앱에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및 가전사의 앱 기능을 통해 구현 가능합니다.(연계되는 이동통신사나 가전사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연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으로 연동되는 홈넷 및 3rd Party 들의 하자보증기간은 각 기기별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혹은 가전사의 음성인식 스피커는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앱 서비스 이용 조건은 사용자와 통신사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의 앱을 통해 IoT 가전 연동기능을 사용할 경우, 이동통신사의 정책 및 가전사의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IoT 가전기기제어는 세대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기능이 가능합니다.(소비자가 별도 구축)
- IoT 가전은 이동통신사 별로 연동 가능한 모델이 상이하니 통신사의 앱을 통해 연동 가능한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 설치 후 이용 가능하며, SmartThings 앱에 제품등록 및 푸르지오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을 통해 연동 가능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품은 9종 가전(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Smart TV)이며, 모델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공 기능도 사업주체 및 삼성전자의 운영 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삼성 SmartThings 앱 사용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6.0이상 iOS 10.0 이상부터 지원(아이폰의 경우 아이폰 6 이상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빅스비

	사용 시, 안드로이드7.0 누가 이상 iOS 10.3 이상부터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홈페이지, 빅스비 사용 환경은 삼성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댁내에 와이파이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소비자 별도 구축). 또한 삼성전자의 SmartThings 앱을 통한 세대내의 각 종 홈넷 기기의 제어서비스는 입주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IoT 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 전환 시 해당 플랫폼 제공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 LG전자의 스마트 가전과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과의 연동은 당 사의 개발 일정이나 해당 사의 정책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및 홍보물

구분	내 용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는 122A, 142A, 182A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홈페이지 CG 및 안내자료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수납공간, 실면적, 발코니 형태 및 크기 등 견본주택에 전시된 주택형과 다른 사항(마감자재, 제공품목 및 가구 디자인 등)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및 옵션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본 시공 시 발코니 확장 및 확장 시 포함품목은 별도 계약 사항임) 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공급안내, 기타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조감도, 사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및 전시모형을 포함한 각종 홍보물의 가구 소품, 디스플레이,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된 세대는 평면 및 마감재의 유상옵션이 적용된 형태로 건립되어 있으므로, 기본형 마감재 / 가구형태 / 가전 / 평면형태 등에 대해서 반드시 별도 안내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되지 않은 주택형 및 타입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분양 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마감재 및 아파트 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옵션 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건축허가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 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접근이 제한되거나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인허가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 외 견본주택 미건립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옵션의 형태 등은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 및 가구(커텐,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된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창호, 유리슬라이딩 도어, 실외기실 도어, 현관 방화문, 가구, 마루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또한 AL 외부창호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미관코킹은 견본주택 설치상의 특성으로 인해 임시 반영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미시공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 시 미관 및 성능향상 등을 위해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된 사항은 추후 견본주택기준으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신고)처리 할 예정임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견본주택에는 외장재에 의한 창호 간섭이 표현되지 않았으며, 간섭되는 세대가 일부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 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 시에 동질 및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추가선택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안내자료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로서 본 시공 위치와 사양 등이 상이합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환기 디퓨져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생활 가구류(침대, 책상, 책장, 소파 등), 생활 가전류(세탁기, 건조기, 밥솥, TV, 기타 주방 및 침실 소형가전 등), 침장 및 커튼류, 그림 액자, 인테리어 소품 등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주방가구는 확장형으로 설치되었으며, 기본형은 주방가구 배치가 변경되고, 설치 수납 가구가 상이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연출용 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온도 조절기, 일괄소등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현관 도어폰, 세대 분전반, 통신 단자함 등의 제품 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각종 위생도기와 수전, 액세서리류, 냉매배관박스, 바닥배수구, 각종 조절기와 조작버튼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나 높이, 색상,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기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은 법규에 의거해 거실 또는 침실, 복도, 발코니 등의 노출된 장소에 설치될 수 있으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의 녹지, 도로, 학교, 해변, 공원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공사의 시공 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조성 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보안용 CCTV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마주보는 미러형 타입의 경우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의 위치가 간섭에 의하여 세대 간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 견본주택보다 훨씬 이동되어 설치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디스플레이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습니다.

12 기타사항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주택법」제48조의2「주택법시행규칙」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단, 사전방문 기간 종료 이후 계약체결되는 세대의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2일전부터 단지 내에 개설되는 입주지원센터를 통해서 해당 세대를 임시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일 : 2029년 07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

-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동ㆍ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함.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 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금 및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및 하자판정 기준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각 위치별로 일부 높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높이
차량 주출입구(101동 인근), 부출입구(101동과 102동 사이) 2개소 지하 3층 주차장 진입 출입구 높이 : 2.7m 이상 지하 4, 5층 주차장 진입 출입구 높이 : 2.3m 이상	지하 3층 : 2.7m 이상(택배차량 진입가능) 지하 4층 : 2.3m 이상(택배차량 진입불가) 지하 5층 : 2.3m 이상(택배차량 진입불가)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운영사 사무실, 대여금고, 세탁서비스, 도서관, 멀티룸, 공유오피스, 독서실, 스트리밍 시네마, 레스토랑 카페, 사우나, 피트니스, GX룸, 필라테스, 골프클럽, 스크린골프, 테니스, 스크린테니스, 어린이집, 경로당,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공간, 게스트하우스, 스카이커뮤니티

▌내진성능 및 능력

- 본 아파트는「건축법」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수정 메르칼리진도 계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함.

내진능력(MMI 등급)
내진능력 Ⅶ-0.221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진도 계급 (MMI등급, Ⅰ~Ⅶ)으로 표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 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 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해당없음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 및 「주택법」제39조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과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 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공사,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예비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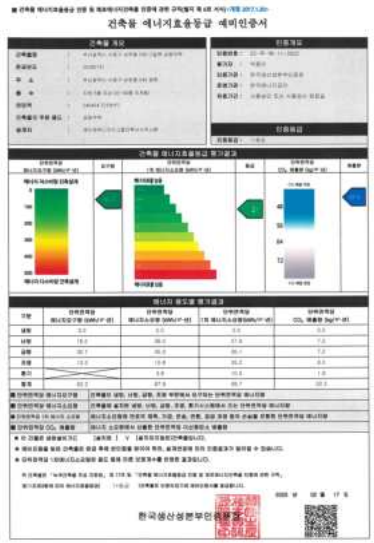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건축·토목·기계감리	전기	통신	소방감리
회사명	㈜동우이앤씨	㈜한미래엔지니어링	㈜세종기술단	㈜태양유니스
감리금액	10,671,078,000	1,043,251,755	529,540,000	1,455,436,889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관련된 사항 [단위 : 원]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92025-101-0003000호	1,515,460,96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주택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사고, 보증채무의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섀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함.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증회사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66-9009)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 공 사
상호	큐브광안피에프브이㈜	㈜대우건설	에스씨건설㈜	㈜대우건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7, 비동 1801호 (서초동, 부띠크 모나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을지로 4가)	경기도 수원시 영동구 대학로 43, 비동111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을지로 4가)
법인등록번호	110111-8500369	110111-2137895	110111-2249129	110111-2137895

※ 본 분양물건은 해당 사업의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큐브광안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서 시행·공급하는 사업으로써,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시행자인 큐브광안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주택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써,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큐브광안피에프브이 주식회사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 및 보존등기 상의 사업주체는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큐브광안피에프브이 주식회사로 명기될 예정입니다.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31 제1항 제8호」에 따라 자금관리업무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신탁업을 경영하는 금융회사)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 분양대금 납부계좌,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 품목 공사비 납부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입금포함)의 명의는 큐브광안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의 자금관리업무수탁사인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견본주택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22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prugio.com/summit/limited**
▌ 분양문의 : ☎ 1599-3121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견본주택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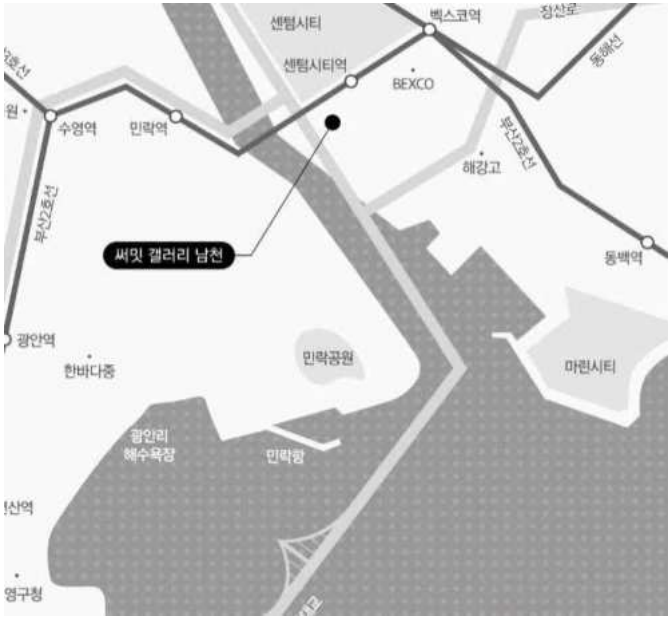	
견본주택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22번지	현장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545-2번지 일원